

세법연구 09-02

주요국의 기부관련 세제지원제도와 시사점

김진수 · 김태훈 · 김정아

2009. 8

세 법 연 구 센 터

 한국조세연구원

목 차

I. 서론	7
II. 우리나라의 기부관련 과세제도	9
1. 기부금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9
가. 개요	9
나. 소득세	10
다. 법인세	20
라. 상속세 및 증여세	26
2.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27
가. 개요	27
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28
다. 공익법인(운영소득 등)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33
III. 주요국의 기부관련 과세제도	37
1. 미 국	37
가. 기부금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37
나.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49
2. 캐나다	54
가. 기부금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54
나.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57
3. 일 본	62
가. 기부금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62
나.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66
4. 영 국	72

가. 기부금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72
나.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80
IV. 국제비교 및 시사점	85
1. 국제비교	85
가. 개인 기부금의 조세지원제도 비교	85
나. 법인 기부금의 조세지원제도 비교	87
다. 용역 기부	88
라. 이월공제 비교	88
마. 기부금 조세지원 대상단체 비교	89
바. 상속세 비교	90
사. 증여세 비교	91
아. 공익법인 범위관련 과세제도 비교	91
2. 시사점	94
가. 세제지원 대상 기부금의 범위	94
나.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의 방법	96
다.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의 크기	97
라. 용역 기부금의 인정 여부	97
마. 기부받는 단체에 관한 규정	98
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자산에 대한 과세	99
사. 공익법인의 운용소득에 대한 과세	99
참고문헌	102

표 목 차

〈표 IV-1〉 주요국의 개인 기부금에 대한 조세혜택 한도 비교.....	86
〈표 IV-2〉 주요국의 법인 기부금에 대한 조세혜택 비교.....	87
〈표 IV-3〉 주요국의 용역 기부 비교.....	88
〈표 IV-4〉 주요국의 기부금에 대한 이월공제 비교.....	89
〈표 IV-5〉 주요국의 기부금에 대한 조세혜택의 대상 비교.....	90
〈표 IV-6〉 주요국의 기부금에 대한 상속세 비교.....	90
〈표 IV-7〉 주요국의 기부금에 대한 증여세 비교.....	91
〈표 IV-8〉 주요국의 공익법인 범위.....	92
〈표 IV-9〉 주요국의 공익법인 관련 과세제도 비교.....	94

I. 서론

- 사회의 규모가 커지고 다양화됨에 따라 정부의 기능 및 역할도 계속 확대되어 오고 있음.
 - 사회복지 및 공익증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정부가 수행하는 많은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사회 및 경제규모가 커지는 속도를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만족시킬 수 없는 오늘의 상황에서는 정부 이외의 민간분야의 참여가 절실하게 되었음.
 - 사회복지 및 공익증진을 위한 민간분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정부는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사용하게 되었고, 그 중 대표적인 정책이 기부에 대한 조세정책이라 할 수 있음.
 - 정부는 기부에 대한 직접적인 세제지원을 하는 한편 민간분야에 대하여 여러 유형의 세제유인정책을 사용함으로써 비영리사업에 민간분야의 참여를 유도하여 왔음.

-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경기후퇴가 야기되면서 기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신빈곤층이 증가하고 양극화가 심화되며, 감세와 재정지출로 인하여 재정건전성이 약화될 우려가 증가되고 있음.
 - 이러한 경제적 배경을 바탕으로 ‘기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경제위기 극복 및 사회통합을 위하여 건전한 기부문화의 활성화와 제도 정착이 필요하게 되었음.
 - 우리나라의 기부문화 정착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세법 측면에서도 기부지원제도에 대한 다양한 방법 모색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본 보고서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조사·연구하여 보다 효

과적인 세제지원 방향을 도출해 보고자 함.

○ 주요국의 기부에 대한 세제지원 현황을 살펴보고자 함.

–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의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법인세 등 세법 전반에 걸친 기부지원제도를 조사하고자 함.

○ 조사 대상 국가들의 공익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현황도 조사하고자 함.

□ 본 보고서의 구성은 아래와 같음

○ 제I장 서론에 이어 제II장에서 우리나라의 기부에 대한 세제와 공익법인에 대한 세제를 살펴보고, 제III장에서는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의 기부에 대한 세제지원과 공익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보고자 함.

○ 이를 바탕으로 제IV장에서는 주요국들의 세제와 우리나라제도를 비교·분석해 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II. 우리나라의 기부관련 과세제도

1. 기부금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가. 개 요

□ 기부에 관한 과세문제는 다음과 같음.

○ 재산을 기부하는 자의 과세문제

－ 생전에 재산을 기부하는 개인 : 기부금에 해당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 여부 결정됨.

－ 재산을 기부하는 법인 : 기부금에 해당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가 결정됨.

○ 재산을 기부받는 자의 과세문제

－ 사망을 사유로 재산을 이전받는 자 : 상속재산에 해당되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과세 여부 결정됨.

－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이전받는 자 : 증여재산에 해당되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과세 여부 결정됨.

□ 기부금의 경우,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특정요건에 해당되는 기부금에 대해서, 개인의 경우 소득공제, 법인의 경우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음.

□ 기부관련 조세지원제도는 다음과 같음.

○ 기부를 하는 자에 대한 세제지원 : 기부한 재산으로 인하여 조세부담이 경감됨.

－ 소득세법상 기부금 특별공제

－ 법인세법상 기부금 손금산입

○ 기부를 받는 자에 대한 세제지원 : 적극적인 요건을 갖춘 피기부자의 조세부담이 경감됨.

– 상속증여세법상 비과세

–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 기부관련 조세지원제도를 개별 세법별로 아래에서 기술함.

○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원제도는 개별 세법에 포함하여 기술함.

나. 소득세

□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은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소득공제(사업소득자·부동산임대소득자 이외의 자)나 필요경비에 산입(사업소득자·부동산임대소득자, 이하 '사업자')할 수 있음.

○ 다만, 사업자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경우, 그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할 수 없음.

□ 기부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 정치자금기부금 : 조특법 제76조에서 규정한 기부금

○ 법정기부금 :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기부금

○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 : 조특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기부금

○ 특례기부금 : 조특법 제73조에서 규정한 기부금(다만,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은 제외함. 즉, 조특법 제73조 제1항 제1호는 제외)

○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3항에서 규정한 기부금

○ 지정기부금 :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기부금

○ 비지정기부금 : 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부금

□ 기부금의 공제 순서는 다음과 같음. 단, 비지정기부금은 공제되지 않음.

- ① 법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문화예술진흥기금출연금(조특법 제73조 제1항)
- ② 특례기부금(조특법 제73조, 문화예술진흥기금출연금 제외)
- ③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 ④ 지정기부금

1) 법정기부금

□ 공제대상 기부금: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서 이에 해당되는 기부금은 다음과 같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함.
-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 다음의 학교 등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 비영리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증설, 시설 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에 한함)
 - 「기능대학법」에 따른 기능대학
 -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 법정기부금 한도

- 사업자 : 해당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

$\text{한도액} = \text{소득금액} - \text{이월결손금}$

- 초과금액은 해당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불산입
- 비사업자 : 한도 없음.

□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 사업자 : 이월공제 허용되지 않음.
- 비사업자 : 이월공제 허용되지 않음.

2) 정치자금기부금

□ 공제대상 기부금 : 조특법 제76조에서 규정한 기부금

- 조특법 제76조 :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 기부하는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2항

공제방법

- 사업자 : 필요경비 산입
- 비사업자 : 세액공제를 우선적으로 적용 후, 소득공제 추가

공제한도 : 공제한도는 다음과 같음²⁾.

- 사업자인 거주자³⁾
 - 다음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함.

$\text{한도액} = \text{소득금액} - \text{이월결손금}$

- 비사업자인 거주자
 - 0 ~ 10만원 :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이월공제 : 허용되지 않음.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 이외의 정치자금

- 상속증여세법 제12조 제4호 · 제46조 제3호 및 다른 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부받은 자가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함⁴⁾.

3)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

공제대상 기부금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은 소득공제할 수 있음.

공제한도 : 공제한도 계산에 있어서는 법정기부금으로 봄.

2)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1항

3)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제4항

4)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3항

$$\text{한도액} = \text{소득금액} - \text{이월결손금}$$

- 한도 : 해당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
 - 초과금액은 해당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불산입
- 이월공제 :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손금산입

4) 특례기부금

- 공제대상 기부금 : 조특법 제73조 제1항 제1호는 제외
 - 다음의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병원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 「국립암센터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 「독립기념관법」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 다음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한국한의학연구원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창의재단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개발특구지
일본부
-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산업안전연구원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같은 조 제3항 제7호부
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과, 같은 항 제10호 및 제11호의 사업 중
정보문화 및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만 해당한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정부출연
연구기관(법률 제5733호로 동법이 시행되기 전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
정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부설 연구기관으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포함되는
것에 한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 「한국국제교류 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국제교류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
- 결식아동의 결식 해소 또는 빈곤층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동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사망 또는 약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
주자가 설정한 신탁으로서 신탁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
환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신탁에 신탁한 금액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박
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 지출하는 기부금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
는 기부금
- 다음의 국제행사 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

립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 공제한도⁵⁾

$$\text{한도액} = (\text{소득금액} - \text{이월결손금} - \text{정치자금기부금} - \text{법정기부금}^1) \times 50\%^2)$$

주: 1) 법정기부금에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이 포함됨.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 : 100%

- 사업자 : 종합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으로 함.

□ 이월공제 : 한도초과금액이 이월된 각 과세연도에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한도초과금액을 손금산입함⁶⁾. 즉, 1년간 이월공제함.

-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설정한 신탁 중 적격한 요건을 갖춘 신탁에 신탁한 금액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함⁷⁾.

5)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⁸⁾

□ 공제대상 기부금 : 사업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을 제외

5)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6)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의2 제2항

7)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5항

8)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3항

□ 공제한도

$$\text{한도액} = (\text{소득 금액} - \text{이월 결손금} - \text{정치자금 기부금} - \text{법정 기부금}^1) - \text{특례 기부금}) \times 30\%$$

주: 1) 법정기부금에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이 포함됨.

□ 이월공제 : 이월공제 허용되지 않음.

6) 지정기부금

□ 공제대상 기부금 :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에 규정한 기부금으로, 이에 해당하는 기부금은 다음과 같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것 :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단체를 포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다만,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함.
 -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귀속하도록 할 것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할 것
 - 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났을 것
- － 위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이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 등이 열거되어 있음.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 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조합 또는 협회 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
 - 「교육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에 지출하

는 기부금. 다만,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5년간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함.

-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할 것
 - 수입 중에서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것
 -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리할 것
 - 과세기간별 결산보고서의 공개에 동의할 것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 공제한도 :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기부금

○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text{한도액} = (\text{소득금액}^1 - \text{이월결손금} - \text{정치자금기부금} - \text{법정기부금} - \text{특례기부금} - \text{우리사주조합기부금}) \times \frac{10}{100} + \text{Min} \left(A \times \frac{10}{100}, B \right)$ <p>• A :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 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p> <p>• B :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지급금액</p>

주: 1)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함.

2)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5를 적용

○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text{한도액} = \left(\begin{array}{ccccccc} \text{소득} & - & \text{이월} & - & \text{정치자금} & - & \text{법정} & - & \text{특례} & - & \text{우리사주} \\ \text{금액} & & \text{결손금} & & \text{기부금} & & \text{기부금} & & \text{기부금} & & \text{조합기부금} \end{array} \right) \times \frac{20^1}{100}$
--

주: 1)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를 적용

□ 이월공제

- 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⁹⁾.
- 비사업자 : 이월공제 허용되지 않음.

다. 법인세

□ 기부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 대학기부금 : 조특법 제73조 제1항 제14호에서 규정한 기부금
- 법정기부금 :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한 기부금
- 특례기부금 : 조특법 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기부금
- 지정기부금 :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기부금

□ 기부금의 공제순서는 다음과 같음. 단, 비지정기부금은 공제되지 않음.

- ① 대학기부금(조특법 제73조 제1항 제14호)
- ②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조특법 제73조, 다만, 대학기부금 제외)
- ③ 지정기부금

1) 대학기부금

□ 공제대상 기부금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공제한도

$$\text{한도액} = (\text{소득금액} - \text{이월결손금}) \times 100\%$$

-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9) 소득세법 제34조 제3항

□ 이월공제

-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동 초과금액이 이월된 각 과세연도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의 기부금이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함¹⁰⁾.
- 즉,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손금 산입함.

2) 법정기부금

□ 공제대상 기부금¹¹⁾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 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함.
- 국방헌금과 국군장병위문금품의 가액
-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 다음의 기관(병원을 제외)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 비영리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증설, 시설 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에 한함)
 -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의2 제2항

11)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4호

□ 공제한도¹²⁾

-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과 대학기부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text{한도액} = (\text{소득금액} - \text{이월결손금} - \text{대학기부금}) \times 50\%$$

- 조특법 제73조 기부금(대학기부금 제외)은 법정기부금과 합산하여 한도초과액을 계산함.

- 이월공제 :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함.

3) 특례기부금

□ 공제대상 기부금 : 조특법 제73조 제1항 제1호~15호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 법인이 다음의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병원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 「국립암센터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 독립기념관법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 다음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12)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한국한의학연구원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창의재단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산업안전연구원
- 「국가정보화 기본법」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같은 조 제3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과 같은 항 제10호 및 제11호의 사업 중 정보문화 및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만 해당한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법률 제5733호로 동법이 시행되기 전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부설 연구기관으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포함되는 것에 한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 「한국국제교류 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국제교류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
- 결식아동의 결식 해소 또는 빈곤층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동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사망 또는 약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한 신탁으로서 신탁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신탁에 신탁한 금액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 지출하는 기부금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다음의 국제행사 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 공제한도¹³⁾

-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과 대학기부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text{한도액} = (\text{소득금액} - \text{이월결손금} - \text{대학기부금}) \times 50\%$$

- 법정기부금은 조특법 제73조 기부금(대학기부금 제외)과 합산하여 한도초과액을 계산함.

- 이월공제 : 한도초과금액이 이월된 각 과세연도에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한도초과금액을 손금산입함¹⁴⁾. 즉, 1년간 이월공제함.

-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설정한 신탁 중 적격한 요건을 갖춘 신탁에 신탁한 금액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함¹⁵⁾.

13)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14)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의2 제2항

15)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5항

4) 지정기부금

□ 공제대상 기부금¹⁶⁾ : 다음의 비영리법인(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 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단체를 포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다만,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함.
 -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할 것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할 것
 - 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났을 것
- 위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

16)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체 등. 이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 등이 열거되어 있음.

□ 공제한도

$$\text{한도액} = (\text{소득금액} - \text{이월결손금} - \text{법정기부금} - \text{특례기부금 (조특법 73조)}) \times 5\%$$

-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법정기부금 및 조특법 제73조 기부금을 제외한 금액의 5/100를 한도로 함.

□ 이월공제

-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이를 손금산입함.

라. 상속세 및 증여세

1) 상속세

- 상속을 받는 자는 상속받은 상속재산을 공공단체, 공익단체, 및 공익신탁에 기부 등을 할 경우, 상속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는 면제됨.
- 상속재산 기부에 관한 세제지원제도는 다음과 같음. 관련 제도는 '2. 공익법인이 출연 받는 재산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에서 살펴봄.
 - 상속세 비과세 : 상증법 제12조
 -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 상증법 제16조
 -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 상증법 제17조

2) 증여세

- 기부자가 재산을 공공단체, 공익단체, 및 공익신탁에 기부할 경우, 기부된 재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부담할 증여세는 면제됨.
- 재산기부에 관한 세제지원제도는 다음과 같음. 관련 제도는 '2. 공익법인이 출연받는 재산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에서 살펴봄.
 - 증여재산 비과세 : 상속증여세법 제46조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 : 상속증여세법 제 48조

2.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가. 개 요

- 공익법인 등에 관한 과세문제는 다음과 같음.
 -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문제 : 무상이전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소득의 포함 여부
 - 공익법인 운용소득에 관한 과세문제 : 공익법인의 운용소득에 관한 법인세 과세 여부
- 공익법인 등의 과세문제에 대한 조세특례
 -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문제 : 공익법인 등에 기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않음.
 -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는 불로소득으로 부의 세습을 막기 위한 장치임.
 - 공익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이전은 무상이전을 통한 부의 세습과는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부의 사회적인 사용이라는 관점에서 보아, 이를 양성화하기 위하여

조세특례를 부여함.

- 공익법인 운용소득에 관한 과세문제 :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재산의 운용으로 인한 소득의 경우, 과세소득에서 제외됨.
 - 공익법인이 법인세법에서 정한 비영리법인에 해당될 경우에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가 적용됨.
 -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은 공공목적사업으로, 정부의 재정지출을 대신하는 것으로 보아, 제외된 과세소득이 과세될 경우 부담할 납부세액만큼을 감면하는 개념임.

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다음과 같음.
 - 출연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인 경우 : 출연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상속세는 면제됨.
 - 출연받은 재산이 증여재산인 경우 : 출연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증여세는 면제됨.

1)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¹⁷⁾

- 조세지원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공익법인에 출연한 상속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 공익법인 등: 종교·자선·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열거함.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17) 상속증여세법 제16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
- 신고기한 :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 내국법인의 주식 등¹⁸⁾을 출연하는 경우

- 출연하는 주식 등과 다음의 어느 하나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발행주식총수 등¹⁹⁾의 100분의 5까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 만약,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
 - 성실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 100분의 10
 - 성실공익법인 : 상증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상증법 제50조의 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상증법 제50조의 3에 따른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 등
-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²⁰⁾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에 당해

18)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19)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주무부 장관이 공익법인 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조세회피 방지규정

-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 및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즉시 상속세를 부과함.

2)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²¹⁾

□ 조세지원 :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 공익신탁 : 「신탁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으로서 종교·자선·학술·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 공익신탁의 수익자가 상증법 제12조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이거나 그 공익법인 등의 수혜자일 것
 - － 공익신탁의 만기일까지 신탁계약이 중도해지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할 것
 - － 공익신탁의 중도해지 또는 종료시 잔여신탁재산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공익신탁에 귀속될 것

3)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²²⁾

□ 조세지원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21) 상속증여세법 제17조

22) 상속증여세법 제48조

- 다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다음의 어느 하나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을 제외함.
 -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 조세회피방지 규정 : 다음의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징함.

-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함.
- 출연받은 재산²³⁾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주식 등과 다음 어느 하나의 주식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²⁴⁾를 초과하는 경우
 - 취득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²⁵⁾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날까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운용소득을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의 기

23) 당해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함.

24)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

25) 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 등을 제외

간 중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 다음과 같이 기타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운용하는 경우
 -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
 -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직업·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당해 재산의 임대차·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 출연자 및 그 친족, 이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 및 이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 공익법인 등²⁶⁾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 외부감사,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 이 경우, 가산세를 부과함.
- 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출연·취득 및 보유와 관련하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성실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 등을 출연받은 후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제16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4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 등이 제49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당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

□ 공익법인 관련 가산세규정 : 다음의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함.

-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26)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 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과 성실공익법인 등을 제외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는 경우

$$\text{기준금액} = \text{운용소득} \times 70\% = (A^1 - B^2) \times 70\%$$

주: 1)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

2)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및 이월결손금

○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²⁷⁾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기간 중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는 경우

- 매각대금 중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턴 1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30, 2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60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를 말함.

- 이 경우 당해 매각대금 중 직접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가액이 매 연도별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함.

○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봄)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당해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사를 제외)으로 되는 경우

다. 공익법인(운영소득 등)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1) 비수익사업의 법인세 면제

□ 비영리법인이 수행하는 비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가 면제됨.

○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을 제외한 소득은 모두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²⁸⁾.

○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다음과 같음.

27) 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 등을 제외

28) 법인세법 제3조

-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함.
 - 다만, 축산업,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개발업, 교육서비스업 중 유치원, 사회복지사업, 국민연금사업 등의 사업을 제외함²⁹⁾.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 위의 소득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채권 등(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제외)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채권 등의 매각익에서 채권 등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³⁰⁾

□ 조세혜택의 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함.

□ 대상법인

- 지정기부금단체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 손금산입한도액 :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산입 가능

29)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30) 법인세법 제29조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이자소득의 금액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의 배당소득의 금액
 - 상증법 제16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을 제외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용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 위에서 기술된 소득 이외에,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

□ 손금산입한도 특례³¹⁾ : 다음 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손금산입한도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 가능
 - 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등.
-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 가능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

31)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 사후관리

-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함.
-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봄.
-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함.
 - 해산한 때
 -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때
 -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때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5년 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함). 이 경우, 이자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함.

Ⅲ. 주요국의 기부관련 과세제도

1. 미 국

가. 기부금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1) 개인소득세(Individual Income Tax)

가)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 소득공제 한도에 대한 일반 원칙

- 개인의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50%, 30%, 20%로 나누어짐.
- 소득공제 한도 결정에 영향을 주는 주된 요소는 두 가지로서 기부하는 자산의 성질 (현금 혹은 현물자산)과, 자선단체에 대한 연방세법상 분류임.
-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의 기부금에 대한 총소득공제에 대한 한도는 50%를 넘어서는 안 됨.
- 부부가 소득공제를 합쳐서 신고한 경우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배우자 부분이 합쳐지게 되어 부부의 기부금 합계에 대한 한도규정이 적용
- 소득공제 대상은 현금인 기부금액과 기부자산의 공정가액을 합친 금액임.

□ 50% 제한규정

- 다음의 단체들에 기부하는 경우, 소득공제 한도액은 총소득의 50%를 넘지 못함.
 - 공익자선법인(Public Charity Organizations)³²⁾
 - 민간사업재단(Private Operating Foundation)³³⁾

32) IRC §170(b)(1)(A)

- 민간비사업재단 중 도관재단(Private Nonoperating Foundation중 Conduit Foundation)³⁴⁾
- 민간비사업재단 중 공공펀드재단(Private Nonoperating Foundation중 Common Fund Foundation)³⁵⁾

□ 30% 일반제한 규정

- 50% 제한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Qualified Organization들에 기부하는 경우 소득공제 한도액은 개인 총소득의 30%를 넘지 못함.
- 자선단체 사용을 위한(For the use of any organization) 기부³⁶⁾의 경우도 30% 제한 규정이 적용

□ 30% 특별제한 규정

- 자본이득자산(capital gain property)을 50% 제한규정 자선단체에 기부를 한 경우 소득공제는 30% 한도규정 적용

□ 20% 제한규정

- 50% 제한 단체 외의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그 기부가 자본이득자산이면 소득공제 한도에 20% 제한규정이 적용

□ 기부금액이 소득공제 한도규정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5년 동안 소득공제액을 이월하여 공제

- 이월공제금액은 그 해 총소득의 30%를 초과하지 못함.
- 자격요건을 갖춘 보존 목적의 기부(Qualified Conservation Contribution)의 경우 15년 동안 이월공제 가능

33) 본 보고서 11page 참조

34) IRC §§ 170(b)(1)(A)(vii) and 170(b)(1)(E)(ii) 참조

35) IRC §§ 170(b)(1)(A)(vii) and 170(b)(1)(E)(iii) 참조

36) 신탁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

○ 이월공제는 당해 해당 항목에 대한 소득공제 이후에 적용

□ 기부자가 한 가지 이상의 소득공제 한도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다음의 한도에 따라 소득공제 규정 적용

① 기부금이 50% 제한규정에만 해당되는 경우 : 기부자의 총수입(Adjusted Gross Income)의 50% 한도까지

② 30% 제한규정이 적용되는 기부금의 경우의 한도 : $\text{Min}(A, B)$

A : 총수입(Adjusted Gross Income)의 30%

B : 총수입의 50% - 50% 제한규정이 적용되는 기관에 기부한 기부금

③ 특별 30%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자본이득자산(Captital Gain Property)을 기부한 경우의 한도 : $\text{Min}(A, B)$

A : 총수입의 30%

B : 총수입의 50% - 50% 제한규정이 적용되는 기관에 기부한 기부금

④ 20% 제한규정이 적용되는 기부금의 경우의 한도 : $\text{Min}(A, B, C, D)$

A : 총수입의 20%,

B : 총수입의 30% - 30% 제한규정이 적용되는 기부금액,

C : 총수입의 30% - 30% 특별제한규정을 적용받는 자본이득자산의 기부금액,

D : 총수입의 50% - 50% 제한규정을 받는 기관에 대한 기부금 총액과 30% 제한규정이 적용되는 기부금액

나) 용역의 기부

□ 용역기부자에 대한 세제상 혜택

○ 미국에서는 비영리단체에 기부하는 용역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인정되지 않고 있음³⁷⁾.

○ 미국의 국세청은 용역에 대한 가치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용역을 기부하거나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등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정

37) Reg. §1.170A-1(g)

책을 취하고 있음.

- 변호사가 3년에 걸쳐서 법률서비스를 비영리단체에 무료로 제공하고, 매년 그가 제공한 법률서비스의 가치를 산정하여 소득공제를 한 조세소송에 대하여, 미국 법원에서는 해당 변호사는 기부한 용역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사례³⁸⁾가 있음.
- 또 다른 사례로는 비영리단체 라디오방송국에 파트타임으로 방송프로그램 작업을 한 경우³⁹⁾와 신문사에서 신문공란을 비영리단체에 기부한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⁴⁰⁾가 있었음.

다) 기부자에게 혜택(benefit)이 있는 경우

□ 기부자에게 혜택이 있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 관련 판례

- 납세자인 회사가 소유한 토지 일부를 학교 짓는 데에 기부했지만, 새로 짓는 학교에서 만드는 도로가 그 회사가 소유하는 나머지 토지를 훨씬 비싸게 가격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이 경우 납세자인 회사가 공공에게 주는 이득보다 개인적인 이득이 더 많으므로 소득공제가 인정되지 않음.
- 납세자가 대학교에 기부금을 내고, 그 기부금이 납세자에게 해당 대학교의 운동경기 시즌 티켓을 구입하는 권리를 준다면, 기부금의 80%가 소득공제 가능
 - 이 경우에도 실제 티켓비용은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됨⁴¹⁾.
- 납세자가 기부재단으로부터 자산이나 서비스를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구입한 경우 그 차액은 기부금으로 인정(a quid pro quo contribution)
 - 이 경우 “a quid pro quo contribution”이 \$75를 넘으면 수혜단체는 기부자들에게 상품이나 서비스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기부금액이라는 사실을 설명서를 통

38) *Grant v. Commissioner*, 84 T.C. 809(1985)

39) Rev. Rul. 67-236, 1967-2 C.B. 103

40) Rev. Rul. 84-1 C.B. 39.

41) IRC § 170(l)

하여 알려야 함(판매유치시나 기부금을 받을 때에)

- 이러한 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으면 때 “a quid pro quo contribution” 제공마다 자선단체는 \$10의 벌금을 내야 하고, 특정한 모금 행사나 메일 송부는 \$5,000으로 제한됨⁴²⁾.

라)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의 시점

□ 기부금에 대한 공제가 결정되는 시기에 있어서 미국연방세법은 기본적으로 소유권 (Title)이 이전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음.

- 즉, 자선단체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이 공제시점임.

□ 현금 기부의 경우

- 현금이 기부받은 단체에게 전달되는 시점이 공제 시점
- 현금은 기본적으로 점유하는 시점에 소유권이 이전됨.
- 현금을 기부하겠다는 의도를 알리는 것, 예를 들어 장부에 기입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불충분하며, 공제는 실제로 지불이 되었을 때에 발생

□ 수표의 경우

- 미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수표를 통한 기부의 경우에도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기가 공제시점의 기준임.
- 즉, 수표가 기부받는 단체에 전달되는 시점이 공제 시점

□ 신용카드의 경우

- 기부금이 신용카드로 결제되는 경우에는 의무발생시점이 공제시점임.
- 즉 기부자가 카드로 기부금액을 결제하는 시점이 공제시점임(실제로 기부자가 카드금액을 은행에 납부하는 시점이 아님).

42) IRC §§ 6115, 6714

□ 전화 기부의 경우

- 전화를 통하여 기부하는 경우도 소득공제가 인정됨.
- 주로 폰뱅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 금융기관이 자선단체에 지불하는 시점이 소득공제시기임.
 - 금융기관을 기부자의 대리인으로 보기 때문임.

□ 유가증권의 경우

- 주식이나, 채권, 그 밖의 증권들을 기부하는 경우 소득공제 시점은 배서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유효한 증권이 기부받는 단체에 전달된 시기임.
- 만일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라면 우편물을 부친 날짜가 공제 시점임.

마) 조세지원 대상 단체

□ IRC §170(c)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래의 단체들에 기부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의 혜택이 인정됨

- 미국 내에서 설립되었거나 미국 정부(연방정부, 주정부, 정부소유지, District of Columbia)의 법령에 따라 조직된 단체로서,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경우
 - 종교, 자선, 교육, 과학, 문학, 아동이나 동물학대 방지, 아마추어 스포츠를 육성하는 특정 단체
- 퇴역군인 단체
- 숙박제도 등을 운영하는 친목, 연합단체
- 비영리 장묘단체
- 미국정부나 실질적으로 정부의 역할을 수행하는 산하 단체

□ 캐나다, 멕시코, 이스라엘의 자선단체들에 기부한 기부금은 국제조약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소득공제 혜택이 인정됨.

□ IRC §170(c)의 자선단체의 범위는 많은 부분에서 IRC §501(c)(3)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

방소득세법상 면제가 인정되는 자선단체들과 유사하지만 동일하지 않음.

○ 미국 연방세법에서는 네 부분에서 기부금과 관련된 자선단체 관련 규정들이 존재하고 있음.

- ① 자선단체에 대한 연방소득세법상의 면세⁴³⁾
- ② 기부금에 대한 개인 소득세의 공제 부분⁴⁴⁾으로,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인정되는 단체들을 규정함.
- ③ 기부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부분⁴⁵⁾으로, 증여세 공제가 인정되는 단체들을 규정함.
- ④ 기부금에 대한 유산세에 대한 소득공제부분⁴⁶⁾으로, 유산세 공제가 인정되는 단체들을 분류해 놓음.

□ 공익자선법인(Public Charitable Organization)

○ 공익자선법인(Public Charitable Organization)에 대하여는 IRC §170(b)(1)(A)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의 단체들이 이에 해당함.

- 교회나 교회단체
- 교육기관
- 의료기관이나 의료교육기관이거나 의료연구기관인 경우
- 정부지원을 받고 대학교를 위하여 자산관리를 하는 기관
- 미국정부 관련 기관
- 정부 관련 기관이나 일반 공공으로부터 지원받는 조직
- 공익자선법인(Public Charitable Organization)들을 지원하는 조직(Supporting Organization)

□ 민간재단(Private Foundation)

43) IRC §501(c)(3)

44) IRC §170(c)

45) IRC §2522(a)

46) IRC §2055(a)

- 민간재단(Private Foundation)은 공중 다수의 재정지원을 받는 단체가 아닌, 한 명 혹은 몇 명의 기부자들의 지원을 받는 자선단체를 의미함.
 - 보통 한 명의 개인 기부자나 가족들, 혹은 회사 자산의 투자수입을 통하여 재원을 지원받음.
- 민간사업재단(Private Operating Foundation)이란 민간재단 중 대부분의 수익과 자산을 직접 자선활동에 사용하는 단체들을 말하며, 민간사업재단에 대한 성립요건들은 아래와 같은 명문의 규정이 있음.
 - 재무부 시행규칙에 정의되어 있는 Income Test⁴⁷⁾를 충족시켜야 하며
 - Asset Test⁴⁸⁾, Expenditures Test⁴⁹⁾, Support Test⁵⁰⁾의 세 가지 테스트 중 한 가지를 충족시켜야 함.

2) 법인세(Corporation Tax)

□ 법인 기부금에 대한 조세제도

- 법인이 IRC §170(c)의 단체⁵¹⁾에 기부하는 경우, 법인 과세소득의 10%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이 인정됨.
- 법인이 기부주체인 경우는 개인 기부자의 경우와는 달리 기부대상이나 기부자산에 따른 한도규정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법인의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의 경우에도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함.

3) 유산세(Estate Tax)

□ 미국의 유산세는 재산세가 아니며, 재산의 취득에 따른 상속세도 아니고, 양도자의 사

47) Treas. Reg. §53.4942(b)-1(b)(2)

48) IRC §4942(j)930(B)(i)

49) IRC §4942(j)(3)(B)(iii)

50) IRC §4942(j)(3)(B)(iii)

51) IRC §170(c)의 단체들에는 미국정부 관련기관, 교회나 교회단체, 교육기관, 의료연구기관, Supporting organizations 등이 있음

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산 처분에 대한 세금임.

- 유산세는 사망 당시 부의 이전에 대한 세금(tax on transfer)으로 재산 자체(not on property)에 대한 세금이 아님.
- 이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상속세(inheritance tax)란 자산을 고인으로부터 양도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세금으로 유산세와는 구별됨.

□ 과세대상 유산(taxable estate)

- 유산의 총금액(Gross estate)에서 공제금액(allowable deduction)을 빼면 과세대상 유산(taxable estate)이 산정됨.
- 공제금액(allowable deduction)으로는 아래와 같은 항목들이 해당됨.
 - 장례비용(funeral expenses)
 - 운영비용(administration expenses)
 - 유산에 청구된 비용(claims against the estate)
 - 고인의 부채(unpaid indebtedness included in the gross estate)
 - 손실이나 다른 사고비용(losses and other casualties)
 - 자선단체 기부금(charitable deduction)
 - 부부공제(marital deduction)

□ 자선단체 기부금의 유산세 공제(charitable estate tax deduction)

- 자선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의 경우에는 금액의 제한 없이 유산세 공제가 허용됨⁵²⁾.
- 유산세 공제가 허용되는 자선단체는 아래와 같음.
 - ① 미국 연방정부, 주정부 및 공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주정부 산하 기관
 - ② 종교, 자선, 과학, 교육, 예술 혹은 미성년자나 동물보호를 위하여 조직되고 운영되는 자선단체(단체의 소득이 개인이나 주주에게 귀속되지 않고 운영의 상당 부분이 선전이나 정치활동에 이용되지 않는 단체)
 - ③ 증여자산을 종교, 자선, 교육, 예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친목, 연합단체
 - ④ 퇴역군인단체(단체의 소득이 개인이나 주주에 귀속되지 않는 단체)⁵³⁾

52) IRC § 2055(a)

- 만약 유산세를 납부하기 싫다면 납세자는 2007년 기준으로 \$2,000,000에 달하는 면세액만큼을 상속하고 나머지 금액은 생존 배우자에게 남기거나 혹은 자선단체에 기부하면 됨.
 - 납세자가 살아 있는 동안 기부를 하면 소득세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망 이전에 기부하는 것이 바람직함.
- 납세자가 현재 기부하고 싶지만 지금 당장 그로 인한 소득과 지배통제권을 포기하고 싶지 않으면 사후 배우자 혹은 자녀가 유산을 일부 소유할 수 있는 잔여 지분 유산의 기부가 가능함(spilt interest transfer).
- 기부가 적절히 이루어지면 납세자는 잔여 지분 자산(remainder interest)의 가치를 현재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고 이를 유산에 포함한다는 전제하에 유산세 공제도 가능함.
 - 이 때 공제가능한 금액은 자산가액에서 사망률 표(mortality table)에 근거하여 산정된 존속된 권리의 현재가치를 제외한 금액임.
 - 존속된 권리는 기부자나 배우자 또는 자녀의 중신물권 형태를 유지할 수 있고 혹은 기한을 정할 수도 있음⁵⁴).
 - 기부된 자산에서 본인이나 피상속인이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자산의 일정액이나 일정 비율로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수준에는 제한이 있음⁵⁵).

4) 증여세(Gift Tax)

- 미국의 증여세(gift tax)는 개인이 생전에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 자산의 가치에 부과하는 세금(excise tax)임.
- 증여자는 무상 혹은 시장가액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수증자에게 자산을 제공하며,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시장가격을 과표로 부과하고 있음⁵⁶).

53) Reg. §25,2522(a) - 1(a)

54) IRC § 2055(e)(2)(A)

55) IRC § 642(c)(5)

- 우리나라와는 달리 증여자가 증여 사실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수증자(beneficiaries)는 소득세나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음.

□ 과세대상인 증여(Taxable Gifts)

-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taxable gifts)는 해당연도의 총증여금액에서 연간면제금액(annual exclusion)을 제외하고 증여세 공제(allowable gift tax deduction)를 뺀 금액임.
- 과세대상 증여(taxable gifts)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이 있는데, 아래와 같음.
 - 학비(tuition)⁵⁷⁾
 - 의료비(medical care costs)⁵⁸⁾
 - 연금 권리의 포기(waiver of pension rights)⁵⁹⁾
 - 예술작품 대여(loan of artworks)⁶⁰⁾
 - 정치단체에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transfers to political organizations)⁶¹⁾
- 연간면제금액(annual exclusion)
 - 연간면제금액(annual exclusion)이란 매년 고정금액을 증여세에서 면제하기로 결정한 금액으로 2009년 기준으로 \$ 11,000⁶²⁾임.

□ 자선기부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charitable contribution deduction)

- 증여세 공제에는 부부공제와 자선기부금에 대한 공제 두 가지가 인정되고 있음.
- 자선단체에 기증한 자산은 금액한도와는 상관없이 증여세의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증여세의 공제가 인정되는 자선단체의 정의는 유산세와 동일함.
 - ① 미국 연방정부, 주정부 및 공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주정부 산하 기관

56) IRC § 2501

57) IRC § 2503(e)

58) IRC § 2503(e)

59) IRC § 2503(f)

60) 미술, 역사, 창의적인 유형자산을 자선단체에 대여해 주는 경우

61) IRC § 2501(a)(5)

62) IRC § 2503(b)(2)

- ② 종교, 자선, 과학, 교육, 예술 혹은 미성년자나 동물보호를 위하여 조직되고 운영되는 자선단체(단체의 소득이 개인이나 주주에게 귀속되지 않고 운영의 상당 부분이 선전이나 정치활동에 이용되지 않는 단체)
- ③ 증여자산을 종교, 자선, 교육, 예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친목, 연합단체
- ④ 퇴역군인단체(단체의 소득이 개인이나 주주에 귀속되지 않는 단체)⁶³⁾

□ 자산을 개인과 기부단체에 공동으로 이전하면 특별 규정이 적용됨(split interest transfer).

- 일반적으로는 잔여자산 지분(remainder interest)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증여세에 대한 공제는 인정되지 않음.
- 증여세에 대한 기부금 공제가 인정되는 잔여자산 지분 이전의 형태는 아래와 같음.
 - 연금기금의 자선단체 기부(Charitable remainder annuity trust)⁶⁴⁾
 - 잔여재산의 자선기부 신탁(Charitable remainder unitrust)⁶⁵⁾
 - 공동소득기금(pooled income fund)
 - 보증연금(Guaranteed annuity)⁶⁶⁾
 - 비율제한 규정에 따른 기부(Annual fixed percentage distribution of fair market value of property)⁶⁷⁾
 - 주거지나 농장에 대한 잔여권의 기부(remainder interest in a personal residence or farm)⁶⁸⁾
 - 자산의 공동소유지분의 기부(undivided portion of a donor's entire interest in a property)⁶⁹⁾
 - 보전 목적의 기부(qualified conservation contributions)⁷⁰⁾

63) Reg. §25,2522(a) - 1(a)

64) IRC §664(d)(1)

65) IRC §664(d)(2)

66) IRC §2522(c)(2)(B)

67) IRC §2522(c)(2)(B)

68) IRC §2522(c)(2), 170(f)(3)(B)(i)

69) IRC §2522(c)(2), 170(f)(3)(B)(ii)

- 2010년이 되면 미국 유산세는 1년간 일시적으로 폐지되는 반면, 증여세는 소득세 최고 세율과 같은 35%(500,000달러 이상의 증여)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며 만약 의회가 다른 결정을 하지 않으면 2011년에는 다시 2001년의 세법이 적용됨.

나.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1) 법인세

- IRC §501(c)(3)에서 규정하는 자선, 교육, 종교, 연구 등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는 법인세가 면제됨.
 - 면세를 받으려면 해당 단체는 주식회사, 신탁기금 또는 재단으로 설립되어야 하며 Form 1023을 작성, 면세신청을 하여야 함.
-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면제되지만, 본래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사업으로부터 얻은 소득이 10,000달러 이상인 경우 영리법인에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고유목적무관사업소득세(Unrelated Business Income Tax, UBIT)가 부과됨.
 - 세법에 명시된 고유목적무관사업이라 함은 고유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으면서 정기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을 말함.
 - 납부해야 할 세금이 500달러 이상으로 추정되면 분기별로 납부해야 하고 신고일에 확인 신고하여야 함.

2) 유산세와 증여세

- IRC §2055에 따라 종교, 자선, 과학, 문학 및 교육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단체와 법인에 계 이전되는 유산자산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유산자산(taxable estate)에서 제외됨.
- 증여세의 경우 증여한 개인 또는 법인이 과세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기부받는 비영리법

70) IRC §2522(c)(2), 170(f)(3)(B)(iii)

인은 과세대상과 무관함⁷¹⁾.

- 증여나 유산, 유증, 상속받은 것의 자산에서 생긴 소득은 과세대상으로 총소득에 포함됨.
- 증여세 부과시 종교, 자선, 과학, 문학,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에 이전되는 재산은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에서 공제함⁷²⁾.

3) 가산세(Excise Tax)

□ 민간재단(private foundation)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가산세(Excise Tax)라고 불리는 세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IRC §4940에서부터 §4945까지에 규정되어 있음.

- 순투자수익에 대한 과세(tax on net investment income)규정인 IRC §4940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법률에서 규정하는 위반사항들에 대한 벌금 과세의 성격을 가지며, 이러한 제재는 위반사항들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경고의 의미가 있음.
 - 이러한 벌금 과세 형태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로는 자기내부거래 행위, 고유 목적에 지출되지 않은 소득, 기업주식 초과보유, 투기적인 투자, 과세대상 지출 등이 있음.
- 제한 시간 내에 이러한 수정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좀 더 높은 금액의 두 번째의 벌금이 부과됨.
- 반복적인 위반은 민간재단의 등록 취소로 연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간재단의 모든 자산의 정부에 몰수됨.
- 민간재단은 관리규정(governing instrument)에서 금지하고 있는 활동에의 참가 또는 소득의 누적을 금지하지 않는 경우 면세자격이 주어지지 않음⁷³⁾.

71) IRC §2502(e)

72) IRC §2522

73) IRC §508(e)

가) 순투자수익에 대한 과세(Tax on Net Investment Income)

□ IRC §4940 규정에 따라 민간재단의 순투자수익(net investment income)에 대하여 2%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음.

- 1959년 세법개정으로 민간재단(private foundation)의 투자수익에 대해 4% 가산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였으며 1976년 이후 2% 인하됨⁷⁴⁾.
- 순투자수익(net investment income)이란 총투자수익(gross investment income)과 순자본이득(capital gain net income)을 합한 금액에서 수익을 위해 지불한 비용들을 뺀 금액을 의미함.

나) 자기내부거래(Self-Dealing)에 대한 과세

□ IRC §4941(d)(1)에서는 민간재단과 부적격자(disqualified persons)⁷⁵⁾ 간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다섯 가지 유형을 정의하고 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정부 공무원과의 거래에 대한 제한 규정도 마련하고 있음.

- 이러한 자기내부거래 유형은 아래와 같음.
 - ① 매매 및 교환(Sales and Exchanges) : 민간재단과 부적격자 간에 자산의 매매나 교환이 있는 경우, 거래가격이 공정시장가격에 거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자기내부거래에 해당됨.
 - ② 상품이나 서비스, 편의시설의 제공(Furnishing of Goods, Services or Facilities) : 민간재단과 부적격자 간에 상품이나 서비스, 편의시설의 제공이 있는 경우에 자기내부거래에 해당함.
 - ③ 보수에 대한 지불(Payment of Compensation) : 민간재단과 부적격자 간에 보수나 부채에 대한 배상비용이 지나치게 많거나 자선목적 수행하는 데에 합리적이고 필요한 만큼이 아닌 경우 자기내부거래에 해당함.
 - ④ 자산이나 수입의 사용 또는 이전(Use or Transfer of Assets or Income) : 민간재단

74) IRC §4940

75) 부적격자란 ① 재단에 상당한 기부를 한 자, ② 재단경영자, ③ 법인의 의결권, 조합의 이익분배권, 신탁 혹은 비법인조직의 수익원의 20% 이상을 소유한 자로 재단에 상당한 기부를 한 자, ④ ①~②에 해당하는 자의 가족

의 수입이나 자산을 부적격자의 이득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자기내부거래에 해당됨.

⑤ 자금대출(Loan) : 민간재단이 부적격자에게 돈을 대출해 주는 경우 자기내부거래에 해당됨.

⑥ 정부 공무원에게 돈을 지불하는 경우(Payment to Government Officials) : 민간재단이 정부 공무원에게 돈을 지불하는 계약을 맺은 경우, 비록 그 비용이 금액상 합리적인 경우이더라도 자기내부거래에 해당됨.

○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의 출연재산에 대한 사적인 사용·수익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고 있는 반면, 미국의 경우 자기내부거래(self-dealing)로 분류되어 가산세가 부과됨.

□ 부적격자에게는 적격자와 민간재단 간에 이루어진 자기내부거래금액의 5%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관련 재단 매니저에게는 거래금액의 2.5%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됨⁷⁶⁾.

다) 고유목적에 지출되지 않은 소득

□ IRC §4942에서는 민간사업재단(private operating foundation)이 아닌 민간재단(private nonoperating foundation)의 경우, 매년 고유목적에 최소 금액을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재단의 순투자자산의 5%인 최소투자수익(minimum vestment return)을 매년 고유(공익)목적으로 지출 또는 분배하여야 함.

○ 지출하지 않은 소득(undistributed income)이란 지출할 수 있는 금액(distributed amount)에서 적격지출액(qualifying distribution)을 차감한 금액이며, 다음 회계연도 시작일 전까지 지출하지 않은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의 15%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함.

○ 15%의 가산세를 부과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지출하지

76) IRC §4941

않은 소득(undistributed income)의 100% 금액을 가산세로 추가 부과하고 있음.

라) 기업주식 초과보유(Excess Business Holding)에 대한 과세

□ IRC §4943에서는 민간재단과 비적격자의 지분을 모두 합하여 주식회사의 경우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민간재단에 의한 기업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재단의 소유주식 지분을 제한하는 것이며, 민간재단은 면세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이러한 민간재단에 의해 기업이 지배될 경우 일반 영리기업과의 세제상 형평성이 위배되기 때문임.

○ 보유한도를 초과하는 추가 보유분에 대해서는 그 가액의 5%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됨⁷⁷⁾.

○ 최초 가산세가 부과된 이후 회계연도 말에도 여전히 기업주식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을 경우 그 가액의 200%에 상당하는 세금을 추가로 부과함.

마) 투기적인 투자(Jeopardy Investments)에 대한 과세

□ IRC §4944에서는 민간재단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협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 재단에 의해서 투자되는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 가산세가 부과된 후에도 당해 과세기간 안에 투기적인 투자가 계속되는 경우 투자액의 25%에 상당하는 추가가산세가 민간재단에 부과됨.

○ 재단 매니저가 그 투자에 참여했다면 타당한 이유가 없는 한 5%의 가산세가 재단 매니저에게 부과되며 과세기간 안에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5%에 상당하는 세금이 추가로 부과됨.

바) 과세대상지출(Taxable Expenditures)에 대한 과세

□ IRC §4945에서는 출연재산의 부적절한 사용을 막기 위하여 세법상 과세대상지출을 명시하고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음.

77) IRC §4943

- 과세대상지출은 다섯 가지로 분류되어 규정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홍보나 로비활동
 - 입법에 영향을 주거나 투표에 영향을 주는 행위
 - 개인들에 대한 보조금
 - 공공 자선단체 이외 다른 단체에 대한 보조금
 - 자선목적 외의 다른 목적의 지출
- 명시된 과세대상지출을 하는 민간재단에는 1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과세대상지출이라는 것을 알고 지출에 동의한 재단 매니저에게는 2.5%의 가산세(최고 5,000 달러 한도로)를 부과함.

2. 캐나다

가. 기부금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1) 소득세

□ 자선단체(charities) 기부금 세액공제

- 자선기부금(charitable donations) 규정에 따라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기부금은 다음의 금액을 세액공제할 수 있음.
 - CAD200 이하의 기부금 : 기부금의 15%
 - CAD200 초과인 기부금 : 기부금의 29%
- 자선단체(charity) : CRA(Canada Revenue Agency)에 자선단체로 등록된 단체
-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기부금의 한도 : 다음을 합산한 것임.
 - ① 기부자의 순소득(net income)의 75%
 - 문화유산 및 생태보호토지의 기부는 순소득(net income)의 100%
 - 당해연도 사망자의 경우 순소득의 100%
 - ② 당기에 기부한 자본자산(capital property)으로 인해 발생한 자본이득 중 소득

(income)에 포함시킨 자본이득의 25%

③ 당기에 감가상각자산의 기부로 인해서 과세소득에 포함시켜야 할 감가상각비 환수액(recaptured depreciation)

- 이월공제 : 공제한도를 초과한 자선기부금은 5년 동안 이월공제됨.
- 당해연도 사망자의 경우 소급공제가 가능함.

□ 자본자산 기부세액공제

- 자본자산의 기부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은 전액 세액공제됨.
- 이월공제 : 미사용 세액공제액은 5년간 이월공제 가능함.

□ 정치기부금 세액공제

- 등록정당(registered federal political party)이나 공개적으로 추천된 입후보자에게 지급한 기부금은 다음의 한도로 세액공제할 수 있음⁷⁸⁾.
- 세액공제한도 :
 - CAD400 : 기부금액의 75%
 - 400 < CAD < 750 : 기부금액의 50%
 - 750 < CAD < 1,275 : 기부금액의 33.33%
 - 다만, 총액한도는 CAD650임.
- 이월공제 : 정치기부금에 대한 이월공제제도는 없음.

2) 법인세

□ 자선단체(charities) 기부금 소득공제

- 자선기부금(charitable donations) 규정에 따라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기부금은 과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음.
- 자선단체(charity) : CRA(Canada Revenue Agency)에 자선단체로 등록된 단체
- 공제한도 : 다음을 합산한 것임.

78) ITA Sec. 127(3)

- ① 기부자의 순소득(net income)의 75%
 - 문화유산 및 생태보호토지의 기부는 순소득(net income)의 100%
 - ② 당기에 기부한 자본자산(capital property)으로 인해 발생한 자본이득 중 소득(income)에 포함시킨 자본이득의 25%
 - ③ 당기에 감사상각자산의 기부로 인해서 과세소득에 포함시켜야 할 감가상각비 환수액(recaptured depreciation)
- 이월공제 : 공제한도를 초과한 자선기부금은 5년 동안 이월공제됨.

□ 자본자산 기부세액공제

- 자본자산의 기부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은 전액 세액공제됨.
- 이월공제 : 미사용 세액공제액은 5년간 이월공제 가능함.

□ 정치기부금 세액공제

- 등록정당(registered federal political party)이나 공개적으로 추천된 입후보자에게 지급한 기부금은 다음의 한도로 세액공제할 수 있음⁷⁹⁾.
- 세액공제한도 :
 - CAD400 : 기부금액의 75%
 - 400 < CAD < 750 : 기부금액의 50%
 - 750 < CAD < 1,275 : 기부금액의 33.33%
 - 다만, 총액한도는 CAD650임.
- 이월공제 : 정치기부금에 대한 이월공제제도는 없음.

3) 상속세

- 상속재산을 자선단체(charity)에 기부할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가능
 - 캐나다의 경우, 피상속인은 사망 직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것으로 간주함.

79) ITA Sec. 127(3)

○ 따라서 이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할 경우, 소득세법상 기부금 규정이 적용 가능 함.

□ 사망 직전 처분의제(Deemed disposition on death)

○ 피상속인(deceased individual)은 사망 직전 시점에 보유한 모든 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의제함⁸⁰⁾.

○ 자산의 종류에 따라 피상속인의 소득을 인식함.

– 통상소득(income), 감가상각비 환수(recaptured depreciation), 또는 자본이득(capital gain)으로 분류가능함.

– 예를 들어, 자본자산의 경우에는 자본이득이 발생함.

○ 상속가액 : 상속한 자산의 공정시가(fair market value)⁸¹⁾

□ 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deceased individual)임.

나.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1) 공익법인이 출연받는 재산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 자선단체(charities)나 비영리조직(NPO)은 수취하는 기부금(contribution)에 대하여, 자선단체나 비영리조직은 과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이는 기부받은 금액의 연간지출한도(annual disbursement quota) 이상의 금액을 사용하기 때문임.

2) 공익법인(운용소득)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 비영리단체의 분류

○ 자선단체 : 자선활동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 · 운영되고 등록된 비영리단체⁸²⁾

80) sec. 70, ITA

81) sec. 69 ITA

- 조세당국에서 자선 목적으로 설립된 것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모든 형태의 조직이 자선단체가 될 수 있음.
- CRA는 적절한 자선사업 영위 비영리단체에 등록번호를 부여함.
- 소득세법(income tax act)에서는 ‘자선활동(charity)’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제시하고 있지 않음. 다만, 일반적으로 다음의 4가지 목적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봄⁸³⁾.
 - ① 빈곤 구제
 - ② 교육 제공
 - ③ 종교활동 제공
 - ④ 기타 공동체의 공익을 위한 목적
- 비영리조직(NPO) : 비영리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중 자선단체가 아닌 것
 - 자선사업 이외의 사회복지(social welfare), 공공개선(civic improvement) 및 기타 비영리활동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단체
 - 특정한 형태의 조직임. 예를 들어, 정부, 의료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
 - 과학연구,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법인)⁸⁴⁾ 포함

가) 자선단체(charities)의 법인세(income tax) 면제⁸⁵⁾

- 자선단체에 대한 법인세는 면제됨.
 - 자선단체 : 소득에 대한 과세가 면제됨.
 - 다만, CRA에 등록되어야 소득에 대한 과세가 면제됨.
 - 자선단체의 사업소득, 자산소득, 수동적 소득(passive income), 자본이득 등은 소득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과세되지 않음.
 - 자선단체의 경우, 자선활동과 그와 관련된 사업(related business)만 수행 가능하기 때문에 자선활동과 관련 없는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임.

82) sec. 149(1)(f) ITA

83) Canada, Cahier, IFA (1999)

84) sec. 149(1)(i), (8) - (9) ITA

85) sec. 149(1)(f) ITA

□ 자선단체(charities) 분류⁸⁶⁾

- 자선조직(charitable organization)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선단체임.
 - 단체가 직접 자선사업을 수행함.
 - 임원의 50% 이상이 공정가액으로 거래하여야 함.
 - 자선단체가 기부받은 자산의 50%가 한사람이나 조직에 의해서 받지 않아야 함.
- 자선재단(charitable foundation) : 일차적으로 자선활동을 하는 단체에 자금을 제공함.
 - 공공 자선재단 : 자선활동을 목적으로 법인이나 신탁의 형태로 설립되고 운영되며, 적격한 수혜자(qualified donee)에게 소득의 5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
 - 민간 자선재단 : 자선활동을 목적으로 법인이나 신탁의 형태로 설립되고 운영되며, 자선조직이나 공공 자선재단이 아닌 것

□ 자선단체의 유지요건

- 비영리단체(법인)의 주주, 회원 등에게 소득의 일부를 배분해서는 안 됨.
- 자선단체(charity)는 연간 지급한도(disbursement quota)를 준수하여야 함. 중요한 연간 지급한도는 다음과 같음.
 - 직전연도에 발행한 기부금영수증 총계의 80%
 - 직전 2개연도 평균 총자산의 4.5%를 지출하여야 함.
- 지급한도는 다음에 기초하여야 함.
 - 자선조직 : 직전연도에 수취한 기부금
 - 자선재단 : 직전연도에 수취한 기부금과 재단의 투자 포트폴리오 금액

□ 자선재단의 제한사항

- 자선재단에 의한 다른 법인에 대한 통제권 취득은 금지됨.
- 자선재단은 일반적으로 부채의 부담이 금지됨.
 - 다만, 영업자금, 투자자산의 취득과 처분을 위한 자금 및 자선활동의 관리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 등을 위해서 부채를 부담하는 것은 허용됨.
- 다른 자선 단체에 대한 기부활동은 금지됨.

86) <http://www.cra-arc.gc.ca/E/pub/tg/rc4108/rc4108-02e.pdf>

– 지출한도를 맞추기 위하여, 순환적인 기부를 막기 위함.

○ 자선조직의 정치활동 참여는 금지됨.

□ 기부금(gift) 관련 조세지원

○ 자선단체에 기부금을 지급한 납세자는 그 기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법인)나 세액공제(개인)를 할 수 있음.

○ 자선단체는 기부금 영수증을 기부자에게 발행할 수 있음.

나) 비영리조직(Non-profit organizations) 법인세 면제⁸⁷⁾

□ 조세지원 : 자선단체가 아닌 비영리조직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됨.

○ 비영리조직(NPO) : 소득에 대한 과세가 면제됨⁸⁸⁾.

– 이러한 비영리단체는 CRA에 등록하지 않아도 됨.

○ 비영리사업의 경우, 사업소득, 자산소득, 수동적 소득(passive income), 자본이득 등 소득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과세되지 않음.

– 다만, 주로 급식시설, 레크리에이션 시설, 스포츠 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조직이 CAD2,000을 초과하는 연간투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Part I tax)를 부담함⁸⁹⁾.

□ 적용대상

○ 클럽(club), 협회(society) 및 사단(association) 등이 사회복지(social welfare), 공익증진(civic improvement), 레크리에이션(recreation) 및 기타 비영리목적만을 위하여 설립되고 운영되어야 함.

○ 해당 법인의 소득은 주주 등에게 지급되거나 주주 등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됨.

– 다만, 아마추어 선수 육성을 위한 비영리조직은 그러하지 아니함.

87) sec. 149(1)(l) ITA

88) sec. 149(1)(l) ITA

89) sec. 149(5) ITA

□ 비영리조직의 영리활동

- 비영리조직이 영리활동의 의도를 가지고 사업을 수행할 경우, 영리활동에 의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과세함.

□ 기부금(gift) 관련 조세지원

- 비영리조직에 기부금을 지급한 납세자는 그 기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법인)나 세액공제(개인)를 할 수 있음.
- 비영리조직은 기부금 영수증을 기부자에게 발행할 수 있음.

□ 기부금 영수증

- 자선단체는 수취한 기부금에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음.
- 기부금을 수취하는 기부자는 한도 내에서 개인의 경우 세액공제를, 법인의 경우 필요경비(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음.

다) 과학연구·실험개발을 위한 비영리법인(Non-Profit Corporation) 법인세 면제⁹⁰⁾

□ 조세지원 : 과학연구와 실험개발을 수행할 목적만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의 법인세는 면제됨.

□ 적용요건

- 과학연구와 실험개발을 수행할 목적만을 위하여 설립되어야 함.
- 해당 법인의 소득은 주주 등에게 지급되거나 주주 등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됨.
- 다른 회사의 통제권을 취득할 수 없음.
- 수익사업을 수행해서는 안 되며, 연구와 개발에 지급한 비용이 전체 수익의 90%를 미달하여서는 아니 됨.

90) sec. 149(1)(j) ITA

□ 기부금(gift) 관련 조세지원

- 해당 비영리법인에 기부금을 지급한 납세자는 그 기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법인)나 세액공제(개인)를 할 수 있음.
- 해당 비영리법인은 기부금 영수증을 기부자에게 발행할 수 있음.

3. 일 본

가. 기부금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1) 소득세

가) 특정기부금 소득공제

□ 조세지원 : 개인이 국가나 지방공공단체 등에 특정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할 수 있음.

□ 특정기부금에는 다음이 포함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
- 지정기부금 : 공익사단법인, 공익재단법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금
- 특정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 : 공공법인 등 중에서 교육, 과학의 진흥, 문화의 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는 특정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
- 특정공익신탁법인에 대한 기부금 : 특정공익신탁의 신탁재산으로 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전. 특정공익신탁은 주무 장관의 인증을 받은 공익신탁으로, 그 목적이 교육, 과학의 진흥, 문화의 향상, 사회복지 등에 기여하는 것임.
- 인증NPO법인에 대한 기부금 :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중 보건, 의료, 교육 또는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는 활동을 수행할 것으로 인증된 법인에 대한 기부금. 다음의 요건

을 충족하는 법인임.

- 총수입금액 등에서 기부금총액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5분의 1 이상
 - 기부자의 기부액이 전체의 기부금액의 5%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부금총액 등에 산입하지 않음.
 - 국가나 지방자치체 또는 일본이 가맹하고 있는 국제기관으로부터의 위탁사업 수입은 총수입금액으로부터 공제 가능
 - 국가나 지방자치체 또는 일본이 가맹하고 있는 국제기관으로부터의 보조금이나 기부자로부터의 1,000엔 미만의 기부는 총수입금액이나 기부금총액에 모두 포함되지 않음.
- 정당 등 기부금 : 정당, 정치자금단체, 기타정치단체 등의 정치활동에 대한 기부금
 - 재도전 지원을 위한 기부금 : 다음 법인에 대한 기부금
 - ① 공인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특정지역고용회사
 - ② 지구재생법에서 규정하는 공인지역재생계획에서 정한 지역에 본점, 지점 등이 있는 법인

기부금 공제한도

대 상	한 도
기부금공제	Min [소득금액의 40%, 특정기부금액] - 5천엔. 다만, 소득금액의 40% 상당액을 한도로 함.

자료: <http://www.nta.go.jp/shiraberu/ippanjoho/pamph/koho/kurashi/h20/pdf/d-3.pdf>

이월공제 : 기부금에 관한 이월공제제도 없음.

나) 정당 등 기부금 특별공제(세액공제)

- 조세지원 : 특정기부금 중 정당 등에 대한 기부금의 경우, 정당 등 기부금 특별공제를 선택할 수 있음.
 - 정당 등 기부금 특별공제는 선택사항으로, 이를 선택할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 공제대상 기부금 : 정당, 정치자금단체, 기타정치단체 등의 정치활동에 대한 기부금

□ 기부금 공제한도

대 상	한 도
정당 등 기부금 특별공제	(정당 등 기부금 - 5천엔) × 30%. 다만, 소득금액의 25% 상당액을 한도로 함.

자료: <http://www.nta.go.jp/shiraberu/ippanjoho/pamph/koho/kurashi/h20/pdf/d-3.pdf>

□ 이월공제 : 기부금에 관한 이월공제제도 없음.

2) 법인세

□ 조세지원 :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정부나 공공단체 등 특정 단체를 제외하고 일정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액에 산입하지 않음. 기부의 대상이 되는 단체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한도가 있음.

□ 기부금 분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

○ 지정기부금 : 일본민법 제34조(공익법인)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금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① 넓고 일반적으로 모집되며,

② 교육 또는 과학의 진흥, 문화의 향상, 사회 복지에의 공헌, 기타 공익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지출로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것에 충당되는 것이 확실한 것

○ 특정공익증진법인 : 공공법인, 공익법인 등이 교육 또는 과학의 진흥, 문화의 향상, 사회복지에 현저하게 공헌하는 업무가 주된 목적사업인 법인으로 시행령으로 정한 법인

○ 특정공익신탁 : 신탁법 제66조에 규정하는 공익신탁으로 그 목적이 교육이나 과학의 진흥, 문화의 향상, 사회복지에의 공헌 등에 현저히 기여하는 것으로, 신탁종료 시점에 신탁재산이 위탁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것

- 인정NPO법인 : 조세특별조치법 제66조에 따라 특정비영리활동법인(공인NPO법인)으로 인정되어 국세청장의 인증을 받은 법인으로, 보건, 의료, 교육 또는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임.
 - 총수입금액 등에서 기부금총액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5분의 1 이상
 - 기부자의 기부액이 전체의 기부금액의 5%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부금총액 등에 산입하지 않음.
 - 국가나 지방자치체 또는 일본이 가맹하고 있는 국제기관으로부터의 위탁 사업수입은 총수입금액으로부터 공제 가능
 - 국가나 지방자치체 또는 일본이 가맹하고 있는 국제기관으로부터의 보조금이나 기부자로부터의 1,000엔 미만의 기부는 총수입금액이나 기부금총액에 모두 포함되지 않음.
- 재도전 지원을 위한 기부금 :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한 기부금. 다만, 공인지역 재생계획에서 정한 지역에 본점, 지점이 있는 법인에 대한 기부금은 평성25년(2013년) 11월 30일까지 지출하는 것에 한함.
 - ① 공인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특정지역고용회사,
 - ② 지구재생법에서 규정하는 공인지역재생계획에서 정한 지역에 본점, 지점 등이 있는 법인
- 일반기부금 : 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부금

□ 기부금별 공제한도

대 상	한 도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기부금	전액 손금산입
지정기부금	전액 손금산입
특정공익증진법인·공익신탁에 대한 기부금	① 일반기부금 한도액(아래)과 ② 특별기부금 한도액을 모두 적용할 수 있음. 특별손금산입한도 = $[\text{자본금등} \times \frac{\text{월수}}{12} \times \frac{2.5}{1000} + \text{소득금액} \frac{5}{100}] \times \frac{1}{2}$
인정NPO법인에 대한 기부금	
재도전 지원을 위한 기부금	
일반기부금	$[\text{자본금등} \times \frac{\text{월수}}{12} \times \frac{2.5}{1000} + \text{소득금액} \frac{2.5}{100}] \times \frac{1}{2}$

자료: <http://www.nta.go.jp/shiraberu/ippanjoho/pamph/koho/kurashi/h20/pdf/d-3.pdf>

□ 이월공제 : 기부금에 관한 이월공제제도는 없음.

3) 상속 · 증여세

□ 공익법인 취득 재산의 상속세 · 증여세 면제

- 공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해당 공익목적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산을 상속 · 유증 · 수증받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상속세 · 증여세의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 관련된 조세지원제도는 ‘나.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에 기술됨.

나.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1)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가) 상속세 비과세⁹¹⁾

□ 대상자 :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다음의 자⁹²⁾

- 사회복지법 제2조(정의)에 규정하는 사회복지사업, 갱생보호사업법 제2조 제1항(정의)에 규정하는 갱생보호사업, 학교교육법 제1조(학교의 범위)에 규정하는 학교를 설치해, 운영하는 사업 그 외의 종교, 자선, 학술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그 사업 활동에 의해 문화의 향상, 사회 복지에의 공헌 그 외 공익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실시하는 자⁹³⁾

□ 조세지원 : 종교, 자선, 학술 및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이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해 취득한 재산을 해당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확실한 경우, 그 상속재산은 상속세의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91) 일본상속세법 제12조

92) 일본상속세법 제12조 제3항

93) 일본상속세법시행령 제2조

나) 증여세 비과세⁹⁴⁾

- 대상자 :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다음의 자⁹⁵⁾
 - 사회복지법 제2조(정의)에 규정하는 사회복지사업, 갱생보호사업법 제2조 제1항(정의)에 규정하는 갱생보호사업, 학교교육법 제1조(학교의 범위)에 규정하는 학교를 설치해, 운영하는 사업 그 외의 종교, 자선, 학술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그 사업 활동에 의해 문화의 향상, 사회 복지에의 공헌 그 외 공익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실시하는 사람⁹⁶⁾

- 조세지원 : 종교, 자선, 학술 및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이 증여에 의해 취득한 재산을 해당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확실한 경우, 그 증여재산은 증여세의 과세가격에 산입하지 아니함.

다) 인정NPO법인 기부금 상속세 면제

- 대상자 :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자

- 조세지원 : 상속·유증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 까지 인정NPO법인에 대해 그 인정NPO법인이 수행하는 특정 비영리활동에 관련된 사업에 기부를 한 경우에는 그 기부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키지 않음.

- 비영리법인의 승인요건⁹⁷⁾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음.
 - 이익을 구성원으로 분배하지 않고, 또한 해산시에 그 재산을 국가 등에 기증
 - 사원자격 부여에 대해 부당한 조건이 없어야 함.

94) 일본상속세법 제21조의3

95) 일본상속세법 제12조 제3항

96) 일본상속세법시행령 제2조

97) 일본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제2조, <http://law.e-gov.go.jp/htmldata/H10/H10HO007.html>

- 사원은 10명 이상이어야 함.
- 임원으로 3명 이상의 이사와 1인 이상의 감사가 있어야 함.
- 보수를 받을 임원의 수가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하이어야 함.
- 종교 활동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음.
- 특정 공직자 (후보자 포함) 또는 정당 추천, 지지, 반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음.
- 폭력단이나 폭력단의 통제에 있는 기관이 아니어야 함.

□ 특정비영리활동이란, 다음의 17분야의 활동으로 불특정 다수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⁹⁸⁾.

- 보건·의료 또는 복지의 증진을 도모하는 활동
- 사회 교육의 추진을 도모하는 활동
- 마을 만들기의 추진을 도모하는 활동
- 학술, 문화, 예술 또는 스포츠의 진흥을 도모하는 활동
- 환경의 보전을 도모하는 활동
- 재해 구원 활동
- 지역 안전 활동
- 인권의 옹호 또는 평화의 추진을 도모하는 활동
- 국제 협력의 활동
- 남녀 공동 참가 사회의 형성의 촉진을 도모하는 활동
- 아이의 건전 육성을 도모하는 활동
- 정보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활동
- 과학기술의 진흥을 도모하는 활동
-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활동
- 직업 능력의 개발 또는 고용 기회의 확충을 지원하는 활동
- 소비자의 보호를 도모하는 활동
- 이러한 각 호로 내거는 활동을 실시하는 단체의 운영 또는 활동에 관한 연락, 조언

98) 일본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제2조 관련 별표, <http://www.npo-hiroba.or.jp/know/answer02.html#a01>

또는 원조의 활동

2) 공익법인(운용소득 등)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가) 공공법인의 법인세 납부의무 면제

□ 일본 법인세법상 비영리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 공공법인 : 일본법인세법 별표 제1호에서 열거한 법인⁹⁹⁾

– 국립대학법인(국립대학법인법), 지방공공단체(지방자치법), 일본중앙경마회(일본중앙경마회법), 일본방송협회(방송법) 등

○ 공익법인 등 : 일본법인세법 별표 제2호에서 열거한 법인¹⁰⁰⁾으로, 다음은 별표 제2호에서 열거된 법인의 일부 예시임.

– 일반재단법인(비영리형) : ‘일반사단법인및일반재단법인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법인

– 일반사단법인(비영리형) : ‘일반사단법인및일반재단법인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법인

– 공익재단법인 : ‘일반사단법인및일반재단법인에관한법률’ 및 ‘공익사단법인및공익재단법인의인정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법인

– 공익사단법인 : ‘일반사단법인및일반재단법인에관한법률’ 및 ‘공익사단법인및공익재단법인의인정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법인

– 의료법인 : 의료법 제42조의2 제1항(사회의료법인)에 규정하는 사회의료법인

– 종교법인 : 종교법인법에서 규정하는 법인

□ 비영리형 사단법인·재단법인¹⁰¹⁾ : 일반사단법인 또는 일반재단법인(공익사단법인 또는 공익재단법인은 제외) 중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것임.

○ 영리 획득 또는 이익분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99) 일본 법인세법 제2조 제5호

100) 일본 법인세법 제2조 제6호

101) 일본 법인세법 제2조 제9의2호

- 정관에 잉여금의 분배를 실시하지 않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것
- 법인이 해산했을 경우에는 정관에 그 잔여 재산이 국가, 지방공공단체 또는 공익사단법인 또는 공익재단법인 등에 귀속하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것 등
-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로 해당 회원에게 공통이익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법인의 경우, 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조직이 적정하기 위하여,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회원의 상호 지원, 교류, 연락 그 외의 해당 회원에 공통되는 이익을 도모하는 활동을 실시하는 것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어야 함.
 - 정관에 그 회원이 회비로 해서 부담해야 할 금전액의 규정 또는 해당 금전액을 사원총회 혹은 평의원회의 결의에 의해 정하는 취지의 규정이 있어야 함.
 - 각 이사에 대해서, 해당 이사 및 해당 이사의 배우자 또는 삼촌 이내의 친족 등 특수관계자인 이사의 총수가 이사의 총수 중에서 1/3 이하이어야 함 등임.

□ 공공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

나) 공익법인 등의 법인세 납부의무 면제·감면

□ 공익법인 등의 납세의무¹⁰²⁾: 공익법인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없음.

- 내국법인인 공익법인 등의 각 사업연도 소득 중 수익사업으로부터 생긴 소득 이외의 소득 및 청산소득에 대해서는 각각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음¹⁰³⁾.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세함.
 - 수익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 법인 과세 신탁의 인수를 실시하는 경우
 - 일본 법인세법 제84조 제1항(퇴직연금 등 적립금의 액수의 계산)에 규정하는 퇴직연금 업무 등을 실시하는 경우

102) 일본 법인세법 제4조

103) 일본 법인세법 제7조

□ 공익법인 등의 수익사업 과세소득

- 공익법인 등이 수익사업을 수행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됨.
-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조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다음의 33개의 업종으로, 사업장에서 계속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을 말함.
 - 물품판매업, 부동산판매업, 금전대부업, 물품대부업, 부동산대부업, 제조업, 통신업, 운송업, 창고업, 청부업, 인쇄업, 출판업, 사진업, 석대업(席貸業), 여관업, 요리점업 그 외의 음식점업, 중개업, 대리업, 중립업, 도매상업, 광업, 토석 채취업, 목욕탕업, 이용업, 미용업, 흥행업, 유희소행, 유람소행, 의료보건업, 기예교수업, 주차장업, 신용보증업, 무체재산제공업

□ 공익법인 등의 법인세율

- 공익사단법인·공익재단법인, 비영리형 일반사단법인·일반재단법인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30/100¹⁰⁴⁾
 - 다만,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 8백만원 이하인 경우, 22/100의 세율¹⁰⁵⁾
- 이 외의 공익법인 등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22/100¹⁰⁶⁾

□ 기납부세액공제 불가¹⁰⁷⁾

- 공익법인 등이 수익사업 이외의 사업 또는 이것에 속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에 대해 부과되는 ‘이자 및 배당 등’을 지불받는 경우, 이 ‘이자 및 배당 등’에 부과되는 소득세에 대해서는 기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다) 간주기부금 제도

- 간주기부금 제도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지출을 기부금으로 간주하여 일정비율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제도

104) 일본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

105) 일본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106) 일본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107) 일본 법인세법 제68조 제2항

□ 간주기부금 한도

- 공익법인 등 : 소득금액의 20%까지 손금 허용
-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갱생보호법인 : 소득금액의 50% 손금 허용

4. 영 국

가. 기부금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1) 소득세

- 영국의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소득세에 주어지는 조세혜택제도는 Gift Aid, Payroll Giving, 부동산·지분·증권의 기부(Gift of Land, Building, Shares and Security) 제도가 있음.

가) Gift Aid

- Gift Aid 제도는 영국 자선단체에 현금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자에게 주어지는 조세감면제도로써, 1990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임.
- 조세감면 내용은 크게 기본세율(Basic Rate)과 고세율(Higher Rate)의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자선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은 기본세율(Basic Rate)로 세금을 차감한 것처럼 처리하며, 기부받은 자선단체들은 국세청에 Gift Aid Payment를 청구함으로써 실제 받는 기부금액을 증가시킬 수 있음.
 - 예를 들어 기본세율 납세자가 1,000파운드를 기부한 경우, 자선단체는 기부금의 기본세율인 20%의 250파운드($20/80 \times 1,000$)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선단체에 전달된 총기부금액은 $1,000+250=1,250$ 파운드가 됨.

- 고세율(Higher Rate)의 납세자의 경우에는 소득공제시에 고세율 세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그러나 고세율의 납세자가 기부한 Gift Aid에 대하여 자선단체는 기본세율을 기본으로만 Gift Aid Payment를 청구할 수 있음.
- 따라서 위의 case 경우 고세율의 납세자가 1,000파운드를 기부했다면 자선단체는 기본세율(20%)인 250파운드를 추가로 국세청에 청구할 수 있으며, 고세율의 기부자는 세금반환(Tax Relief)을 기부금에 대한 고세율인 40%와 20%의 차이인 20%(250파운드)를 청구할 수 있음.
 - 따라서 기부자의 총비용은 $1,000 - 250 = 750$ 파운드가 됨.

□ 기부방법으로는 현금, 수표, 직불카드, 신용카드, Postal order, Standing order 등이 가능함.

- 외환도 가능하며 자선단체가 Gift Aid Payment를 청구하는 경우 외환이 환산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여 청구할 수 있음.
- 기부는 실제금액을 지불하여야 하는 것이며, 채권포기나 보증에 대한 권리 등을 포기하는 것으로는 기부가 될 수 없음.
- 서비스나 권리, 기타 상품 등에 대한 대가로서의 지불은 기부가 될 수 없으며, 기부세제에 대한 혜택도 인정되지 않음.
- 아래의 경우들을 Gift Aid에 해당되지 않음.
 - 특정인에 대한 학비지불
 - 책이나 음식 등의 구입에 대한 비용, 바자회 등에서 구입 비용
 - 행사 등에 대한 입장료
 - 복권이나 복권식 판매(Raffle)에 대한 구입비용
 - Raffle 티켓 구입비용은 기부가 아니지만, Raffle 행사에 대한 입장권은 기부로 인정됨. 상을 탈 가능성이 적고 기대가 낮다는 것은 기부금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 아니며 상의 가치가 낮다는 것 등도 기부 여부와 무관함.

□ Gift Aid의 경우, 해당연도 외에도 전년도에 기부한 것으로 소급공제(carry back)하여

조세혜택을 인정받을 수 있음.

- 이 경우, Gift Aid에 대한 소급공제(carry back) 신청서가 접수되는 시기와 납세자의 작년도 원천징수 신고서가 동시에 또는 원천징수 신고서가 소득공제 신청서 이후에 신고되어야 함.
- 작년도 원천징수 신고서가 이미 신고된 경우에는 Gift Aid에 대한 소득공제(carry back) 신청이 불가능함.

나) Payroll Giving

- Payroll Giving은 근로소득자나 연금소득자들이 급여나 연금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기부금으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기부하는 제도임.
- 고용주가 Payroll Giving Scheme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기부금을 지불하고, 기부금액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받음.
 - 조세감면은 최고세율을 기준으로 함.
 - 피고용인이 고용주에게 급여에서 기부금을 차감할 수 있도록 승인하면, 고용주는 이 금액을 급여에서 차감하며 국세청에서 승인한 Agency Charities에 보내고 Agency에서는 이렇게 모아진 기부금을 해당 자선단체에 전달하게 됨.
 - Gift Aid의 경우와는 달리 자선단체가 국세청에 repayment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없음.
 - 기본세율 납세자인 경우 20%의 세율이 적용되어서, 납세자가 매달 10파운드를 기부하겠다고 결정하는 경우 납세자는 실제로 2파운드의 비용이 절약됨(소득세 20% 경감, $10\text{파운드} \times 0.2 = 2\text{파운드}$). 즉 납세자는 실제비용으로 8파운드를 납부하게 됨.
 - 고세율 납세자인 경우 40%의 세율이 적용되어서, 매달 10파운드를 기부하겠다고 결정한 경우 납세자는 실제로 4파운드의 비용이 절약됨(소득세 40% 경감, $10\text{파운드} \times 0.4 = 4\text{파운드}$). 즉 납세자는 실제비용으로 6파운드를 납부하게 됨.
 - 금액에 대한 한도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 최소금액에 대한 규정은 처음부터 없었고, 최대금액에 대한 규정은 2000년 개정

조항에서 삭제되었음.

□ Agency Charities

- Agency Charities는 ‘Charitable Deduction Regulations 1986’ 시행규칙을 실행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의하여 승인된 기관으로서, 기부금을 기부자들이 명시한 기부단체들에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모든 조세경감은 소득원에서 기부자에게 주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Agency Charity나 기부를 받는 자선단체들에게는 세금이 반환되지 않음.
- Agency Charities와 고용주는 시행규칙에서 요건으로 하는 내용들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는 서면계약서를 작성해야 함.
- 영국 국세청의 산하기관인 IR Charities에서는 Agency Charities 신청에 대한 승인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다) 부동산, 지분, 증권의 기부(Gift of Land, Building, Shares and Security)

- 영국에서는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지분이나 증권, 그 밖의 투자자산 등을 기부하는 경우 세제상 인센티브를 인정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는 토지가 건물 등의 부동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도 세제상 인센티브를 인정하고 있음.

□ 증여방식

- 지분(shares)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의 이름과 증여받는 자선단체의 이름을 명시한 주식 이전 서식(stock transfer form)을 작성하여야 함.
- 부동산 증여의 경우, 소득세에 대한 조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선단체로부터 증여에 대한 증명서를 발부받아야 함.
 - 증명서에는 부동산 권리에 대한 설명과 처분일자, 자선단체가 해당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하였다는 확인 설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부동산 증여의 경우 부동산의 모든 권한을 자선단체에 양도하여야 함.

- 예를 들어 자선단체에 건물을 증여하고, 증여자가 그 건물에 계속 거주할 수 없음.
-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여러 사람에게 공동으로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모든 권리가 동시에 해당 자선단체에 모든 권리를 이전시켜야 함.

□ 세금감면의 내용

- 시장가격과 부수비용을 합친 금액에 기부로 인하여 얻은 혜택(Benefit)의 가치를 차감한 금액이 조세혜택대상 금액임.
- 예를 들어, 기부자가 5,000주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를 자선단체에 기부한 경우, 기부 당시 가치는 각 주당 10파운드이고 기부자는 브로커 수수료로 50파운드를 지출하였음. 감사의 표시로 자선단체는 기부자에게 50파운드 가치의 책을 증정하였음.
 - 기부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를 계산한다면, 주식의 가치(50,000)+브로커수수료(50)-기부자가 받은 혜택(50)=기부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대상(50,000)
 - 즉, 기부자는 50,000파운드의 금액을 Gift Aid를 통하여 기부한 것이 됨.
 - 자선단체가 가져가는 총금액은 $50,000+50,000 \times (20/80)=62,500$, 즉 62,500파운드임¹⁰⁸⁾.
 - 기부자가 고세율 납세자인 경우 총비용은 $50,000-50,000 \times (20/80)=62,500$, 즉 47,500파운드의 비용이 소요됨.

2) 법인세

가) Gift Aid

□ Gift Aid의 조세감면 사항

- 법인은 자선단체에 기부한 금액을 모두 조세혜택으로 받을 수 있음.
- 자선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은 법인세(Corporation Tax)를 계산할 때에 사업수익(total profits of business)에서 제외되어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됨.

108) page 4의 Gift Aid의 사례 참조

- 기부금 자체는 세금부과 없이 자선단체에 전달되고, 개인 Gift Aid의 경우와는 달리 자선단체는 기부금에 대한 세금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음.
 - 법인에 의한 Gift Aid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임.

□ 법인세 면제 대상인 기부금의 혜택(benefit) 한도

- 법인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기부법인이나 이해관계인(connected person)이 자선 단체로부터 받은 혜택(benefit)이 아래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기부금액(Amount of donation)	혜택가치의 한도(Benefit value limit)
0파운드~10파운드	기부금액의 25%
101파운드~1,000파운드	25파운드
1,000파운드 이상	기부금액의 5%
10,000파운드 이상	500파운드

- 이해관계인(connected person)이란 다음의 경우를 의미함.
 - 기부자의 배우자이거나 또는 자녀나 부모, 조부모와 같은 직계 가족들
 - 기부자의 배우자의 직계가족
 - 기부자의 지배(control)를 받는 법인이나 위의 두 가지 경우들의 이해관계인들의 지배를 받는 법인

□ 아래 기부의 경우에는 법인세가 면제되지 않음.

- 다시 되돌려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기부의 경우
- 법인이나 이해관계인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혜택을 받은 경우
- 자선단체가 해당 법인이나 이해관계인에게서 자산 구매하는 것이 기부의 조건인 경우

나) 부동산과 지분, 증권의 증여(Gift of Land, Building, Shares and Security)

- 2000년부터 법인이 지분이나 증권, 그 밖의 투자자산 등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인정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는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을 기부하는 경우

에도 소득공제가 인정됨.

- 시장가격과 부수비용을 합친 금액에 기부로 인하여 얻은 혜택을 차감한 금액이 조세감면대상임.

다) 법인의 각종 설비, 재고 및 용역 기부

- 법인의 경우 각종 설비나 재고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그리고 임시적으로 근로자들을 자선단체를 위하여 근무하도록 용역을 기부하는 경우에도 조세혜택이 인정되고 있음.

- 각종 설비나 재고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사업을 통하여 얻은 과세수익(taxable profit)에서 법인이 기부한 가치만큼 과세수익이 차감되어 보다 적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조세혜택을 인정하고 있음.

- 설비(equipment)의 기부

- 사업활동에 사용했었던 설비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설비의 가치만큼 자본이득공제(capital allowance)가 인정되어 조세혜택을 법인이 받을 수 있음.

- 재고(trading stock)의 기부

- 사업상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재고물품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재고물품의 가격을 사업상의 과세이익(taxable profits)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근로자의 용역 기부

- 법인이 사업상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용역을 자선단체에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의 급여와 기타 비용들을 필요경비(Busienss expenses)로 인정받을 수 있음.
- 고용자가 근로시간에 자발적으로 자선단체에 용역기부를 하는 경우에도 관계 고용주는 근로자의 급여와 보험료(national insurance)를 사업상 이익을 산정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음.

3) 상속세

- 영국의 상속세란 한 개인의 생애 동안의 증여와 그 개인이 죽은 시점에서의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임
 - 영국에서는 상속세만 존재할 뿐 증여는 자본이득의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이 증여세가 상속세와 함께 보완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점임.
 - 영국에서는 96% 이상의 유산이 전혀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고 있어서 높은 면세점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2001년 4월 6일 또는 이후에 사망시) 시점의 면세점은 242,000파운드이며 유산규모(사망시점 이전 7년간 증여 자산 포함)가 이보다 적은 경우 면세됨.

- 영국에서는 과세대상인 생애이전이 계속해서 증가된 총합이 경계(threshold)¹⁰⁹⁾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생애증여나 사망 시점에서의 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세금도 부과되지 않음.
 - 경계(threshold)를 넘는 이전에 대한 과세율(full rate)은 40%이며, 생애증여를 조장하기 위해서 nil-rate¹¹⁰⁾ 경계를 넘는 과세대상인 생애이전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이전이 이루어진 지 7년이 경과하면 이전은 총합에서 제외됨.

- 증여자가 생전에 또는 사망시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자선단체에 대한 상속세는 금액에 한도 없이 면세되고 있음¹¹¹⁾.
 - 자선단체와 관련된 면세의 예외 규정은 아래와 같음.
 - 자산 처분이 즉각적으로 자선단체를 위하여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109) 2009년 기준으로 242,000파운드임.

110) 과세대상인 재산이전이 총액의 최초의 200,000파운드에 대해서는 0%의 과세율이 부과되는데, 이것을 'nil-rate'이라 함.

111) IHTA 1984, s.23, 24, 56

- 자산이전 이후 12개월 이내에 충족되지 않는 조건이 있는 경우
- 자산처분이 해제될 수 있는 경우
- 기부된 자산이 다른 자산에 대한 권한의 일부이고 그 권한이 기부자의 권한보다 작은 경우 또는 특정 기간 동안의 자산에 대한 권한이 기부된 경우
- 기부된 자산이 부동산이고, 증여자가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점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 기부된 자산이 부동산이 아니고, 기부자가 자산에 대한 권한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경우
- 기부된 자산이 자선목적 이외에 사용될 수 있는 경우

나.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1) 통상소득에 대한 조세혜택

□ 자선단체가 받는 대부분의 소득들이 자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대부분의 소득과세는 면제됨.

○ “자선단체”의 정의: “자선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조직이나 신탁”

- “자선 목적”에 대하여는 전통적으로 판례를 통하여 정리되고 있음.
- The British Museum, the Natural History Museum, the Historic Buildings and Monument Commission and the National Heritage Memorial Fund들은 일반적으로 자선단체가 받는 조세혜택을 인정하므로, 기부금에 대한 조세혜택의 경우도 자선단체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

○ 국세청(HMRC)에 자선단체 등록: 세제상 조세혜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공식적인 자선단체로 등록이 되어야 함.

- CC(Charity Commission, England와 Wales의 경우)나 OSCR(Office of the Scottish Charity Regulator)에 자선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국세청에서 자선단체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인정하여 세제상 자선단체로 인정하고 있음¹¹²⁾.

- 아마추어 스포츠 클럽(Community Amateur Sports Clubs, CASC) : 아마추어 스포츠 클럽 커뮤니티로 등록된 스포츠 클럽은 2002년부터 다양한 세금경감 조치와 자선단체와 유사한 조세혜택이 인정되고 있음.
- 자선단체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정부 산하 기관: England와 Wales의 경우 CC(Charity Commission)와 Scotland의 경우 OSCRC(Office of the Scottish Charity Regulator)
 - CC와 OSCRC에서는 자선단체로부터 등록신청서를 받아 자선단체로 인정할 것인지를 판단하고 등록함.
 - 그 밖에 CC와 OSCRC에서는 자선단체들을 관리, 규제하며 자선활동을 지원
 - 자선단체들은 CC와 OSCRC에게 매년 필수사항(활동내역, 재정사항 등)들을 보고하여야 함.

□ Gift Aid를 통하여 받은 기부금에 대한 조세혜택

- 자선단체는 개인들이 기부한 Gift Aid를 통하여 받은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면제받으며, 국세청에 대하여 기부금에 대한 기본세율(basic rate)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음¹¹³⁾.
- 법인으로 부터 Gift Aid를 통하여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도 자선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금을 면제받음.
- 그러나 법인이 기부한 경우, 자선단체는 국세청에 대하여 기부금에 대한 기본세율(basic rate)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할 수 없음.

□ 투자소득에 대한 조세혜택

- 자선단체가 투자소득을 자선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투자소득에 대하여도

112) CC(Charity Commission)나 OSCRC(Office of the Scottish Charity Regulator)에 등록된 자선단체의 경우에는 다음의 자료들을 국세청에 제시하면 세제상 자선단체로 등록되어짐.

- 자선단체의 이름과 주소
- CC(Charity Commission, England와 Wales의 경우)나 OSCRC(Office of the Scottish Charity Regulator)에 등록된 자선단체 등록번호
- 수탁자의 이름
- 회계기간 만료일

113) 본 보고서의 기부금에 대한 조세제도 중 Gift Aid 부분 참조

과세가 면제됨.

- 이 경우 해외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인 경우에도 자선을 목적으로 소득을 사용한 경우에는 과세가 동일하게 면제됨.

□ 이자소득에 대한 조세혜택

-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조합에서 받는 이자의 경우에도 아래의 요건을 갖추면 조세가 면제됨.
 - 은행이나 금융조합이 해당 자선단체가 영국의 자선단체(UK Charity)임을 알고 있어야 하고
 - 은행이나 금융조합에 해당단체가 자선단체로 등록되었음을 증거로 입증하여야 함. 예를 들어 CC(Charity Commission)이나 OSCR(Office of the Scottish Charity Regulator)에 등록된 등록번호나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선단체임을 인정하는 증명서 등을 제시하여야 함.
- 그리고 자선단체는 당해연도에 조세혜택을 얻은 사실을 해당 은행이나 금융조합에 알려야 함.

□ 부동산소득에 대한 조세혜택

- 자선단체는 토지나 그 밖의 부동산을 대여함으로써 얻는 소득에 대하여, 토지나 부동산을 자선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세금을 면제하여 주고 있음.
- 이 경우 부동산을 개발함으로써 얻는 소득에 대하여는 세금이 면제되지 않음. 예를 들어 사무용 빌딩을 매매를 목적으로 주택으로 변경하거나, 매매를 목적으로 부동산 개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음.

2) 자본이득에 대한 조세혜택

- 자선단체는 자본이득에 대하여 자선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금 면제를 인정하고 있음.

3) 토지에 대한 인지세 혜택

-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자선단체는 토지매매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음.
 - 인지세가 원칙적으로 부과되는 리스계약의 경우에도 자선단체는 인지세가 면제됨.

4) 조세혜택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자선단체가 면세대상이 되지 않는 소득이나 자본이득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해당 소득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함.
 - 대부분의 경우 자선단체는 법인(Company)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법인세(Corporation Tax)를 납부하여야 함.
 - 유언(will)이나 양도증서(deed) 등을 통하여 자선단체로 등록된 경우에는 소득세와 자본이득세를 Self Assessment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함.
 - 자선단체가 국세청에 비면제소득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우, 벌금과 연체이자를 납부하여야 함.
- 자선지출(Charitable expenditure)과 비자선 지출(non-charitable expenditure)
 - 자선단체가 자선목적의 각종 소득을 자선활동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자선지출(Charitable expenditure)이라 하며 각종 조세감면의 혜택이 주어짐.
 - 자선지출(Charitable expenditure)에는 아래와 같은 항목들이 있음.
 - 자선단체 운영 및 유지비
 - 자선단체에서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이나 지원금
 - 자선활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부금을 자선단체가 사용한 경우에는 비자선 지출(non-charitable expenditure)이라고 하며, 모두 세금이 부과됨.
 - 사례를 든다면, 자선단체가 Gift Aid를 통하여 28,000파운드를 기부받았고, 은행이 자가 3,000파운드인 경우 자선단체의 총수입은 31,000파운드($28,000 + 3,000 = 31,000$)가 됨. 자선단체는 10,000파운드를 자선단체 보조금 지원과 운영비로 사용하였고 7,000파운드는 비자선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었으며, 나머지 잔금은 은행저축

계좌에 보관하였음.

- 이 경우, 비자선 목적으로 빌려준 7,000파운드는 비자선지출(non-charitable expenditure)로 조세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선단체가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4,000파운드로 감소하게 됨($31,000 - 7,000 = 24,000$).
- 비자선지출(non-charitable expenditure)인 7,000파운드에 대하여는 자선단체가 조세를 납부하게 됨.

IV. 국제비교 및 시사점

1. 국제비교

가. 개인 기부금의 조세지원제도 비교

- 주요 국가들의 개인 기부금에 대한 조세혜택 내용을 정리해 보면, 캐나다는 기부금에 대하여 세액공제 형식으로 조세혜택을 주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과 일본에서는 소득공제 형식의 조세혜택을 지원하고 있음.
- 영국의 Gift Aid의 경우에는 기부금을 기본세율로 세금을 차감한 것처럼 처리하며, 기부받은 단체들은 국세청에 그 금액을 청구함으로써 실제 받은 기부금액을 증가시키는 독특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¹¹⁴⁾.
-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공제 내용을 기부받는 단체들의 종류를 여러 개별 법률에서 나열함으로써 기부금에 해당 조세혜택의 내용을 복잡하게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의 경우에는 혜택받는 단체들의 요건을 법률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비교적 이해하기 쉽게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114) IV. 영국의 소득세 부분 참조

〈표 IV-1〉 주요국의 개인 기부금에 대한 조세혜택 한도 비교

국가	조세지원 내용		
한국	법정기부금	공제대상 소득금액의 100% 한도 내 소득공제	
	정치자금기부금		
	특례기부금	대상소득의 50% 한도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대상소득의 30% 한도 소득공제	
	지정기부금	대상소득의 10% 한도 소득공제	
미국	공익자선법인	소득공제 한도액 50%	
	민간사업재단		
	민간비사업재단 중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그 외의 연방세법 §170의 자선단체	소득공제 한도액 30%	
	자본이득자산을 50% 한도제한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자본이득자산을 50% 제한 단체 외의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소득공제 한도액 20%		
캐나다	자선단체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 기부금의 15~29%	
	정당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 기부금의 33~75%	
일본	특정 기부금	국가 등 기부금	대상소득의 40% 한도 소득공제
		지정기부금	
		특정공익증진법인 기부금	
		특정공익신탁법인 기부금	
		인증NPO법인에 대한 기부금	
		정당 등 기부금 ¹⁾	
	재단지원에 대한 기부금		
정당 등 기부금 ¹⁾	기부금의 30% 세액공제		
영국	Gift Aid	자선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은 기본세율로 세금을 차감한 것처럼 처리	
	부동산과 지분, 증권의 증여 (Gift of land, building, shares and security)	시장가격과 부수비용을 합친 금액에 기부로 인하여 얻은 이득을 차감한 금액을 Gift Aid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	
	Payroll Giving	기부금액에 대하여 최고세율을 기준으로 조세감면을 받음	

주: 1) 특정기부금에 포함하여 소득공제 한도액에 포함할 수 있으며, 별도로 정당 등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액을 계산할 수도 있음.

나. 법인 기부금의 조세지원제도 비교

□ 개인 기부금에 대한 조세혜택의 내용과 비교한다면, 전체적으로 법인 기부금에 대한 조세혜택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임.

○ 각 국가별 법인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개인 기부금에 비하여 작으며, 개인 기부금에 대한 지원제도가 법인 기부금제도에 비하여 보다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음.

〈표 IV-2〉 주요국의 법인 기부금에 대한 조세혜택 비교

국가	조세지원 내용	
한국	대학기부금	공제대상 소득금액의 100% 한도 내 소득공제
	법정기부금	대상소득의 50% 한도 내 소득공제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	대상소득의 5% 한도 내 소득공제
미국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 소득공제	
캐나다	자선단체 기부금	(기부자의 순소득의 75% + 소득에 포함된 기부자산 자본이득의 25% + 감가상각비 환수액)의 한도 내 소득공제
	정치기부금	기부금액의 33.33~75%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일본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	전액 손금산입
	지정기부금	전액 손금산입
	특정공익증진법인·공익신탁에 대한 기부금	특별손금산입한도= $[\text{자본금 등} \times \frac{\text{월수}}{12} \times \frac{2.5}{1000} + \text{소득금액} \frac{5}{100}] \times \frac{1}{2}$
	인정NPO법인에 대한 기부금	
	재도전을 위한 기부금	
일반기부금	$[\text{자본금 등} \times \frac{\text{월수}}{12} \times \frac{2.5}{1000} + \text{소득금액} \frac{2.5}{100}] \times \frac{1}{2}$	
영국	Gift Aid	과세수익에서 기부금액을 차감
	부동산과 지분, 증권의 증여부동산과 지분, 증권의 증여 (Gift of land, building, shares and security)	시장가격과 부수비용을 합친 금액에 기부로 인하여 얻은 이득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수익에서 차감

다. 용역 기부

- 용역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특별한 조세혜택을 인정하고 있지 않음.
 - 영국의 경우에는 사업상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용역을 자선단체에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의 급여와 기타 비용들을 필요경비(Business expenses)로 인정하고 있음.

〈표 IV-3〉 주요국의 용역 기부 비교

국가	조세지원 내용
한국	없음
미국	없음
캐나다	없음
일본	없음
영국	사업자의 경우 고용 근로자의 용역제공시 필요경비 인정

라. 이월공제 비교

- 미국과 캐나다는 개인과 법인이 자선단체에 기부한 경우, 기부금에 대하여 5년간 이월공제를 인정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에는 Gift Aid의 경우 전년도의 소급공제를 인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의 경우 3년간 이월공제가 인정되고 있으며, 특례기부금(법인), 법정기부금(법인) 등은 1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표 IV-4〉 주요국의 기부금에 대한 이월공제 비교

국가	이월공제 내용	
한국	지정기부금(사업자, 법인)	3년간 이월공제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사업자)	1년간 이월공제
	특례기부금(사업자, 법인)	
	대학기부금(법인)	
	법정기부금(법인)	
미국	5년간 이월공제	
캐나다	5년간 이월공제(정치기부금은 이월공제 없음)	
일본	없음	
영국	Gift Aid의 경우 전년도 소급공제	

마. 기부금 조세지원 대상단체 비교

□ 기부금 조세지원 대상 단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캐나다와 영국의 경우 정부산하 기관인 CRA나 CC, OSCR 등에서 별도로 비영리단체의 신청을 받아 비영리단체들을 등록하고 활동내용을 관리하며, 여기에 등록된 단체들에만 각 국가의 국세청에서 조세혜택을 인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에는 IRC §170에서 규정하는 단체들에게 기부하는 경우 조세혜택이 인정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에는 조세지원 대상 단체에 대하여 여러 법에 각각 분산되어 규정되고 있는 특성이 있음.

〈표 IV-5〉 주요국의 기부금에 대한 조세혜택의 대상 비교

국가	조세혜택 대상 단체
한국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24조, 조특법 제73조, 제76조, 제88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
미국	IRC §170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
캐나다	CRA(Canada Revenue Agency)에 자선단체(charity)로 등록된 단체
일본	법인세법 제76조, 소득세법 제217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
영국	CC(Charities Commission)와 OSCR(Office of the Scottish Charity Regulator)에 등록된 Charities로써 국세청에 자선단체로 등록된 경우

바. 상속세 비교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기부금에 대한 상속세가 면제되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에는 상속개시 직전에 상속재산의 처분으로 의제된 후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인정하고 있음.

○ 미국 연방세법에서는 상속세(inheritance tax)가 아닌 유산세(estate tax) 제도가 있는 것이 특징이며, 이는 양도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산 처분에 대한 세금임.

〈표 IV-6〉 주요국의 기부금에 대한 상속세 비교

국가	내 용
한국	상속재산을 공공단체, 공익단체 및 공익신탁에 기부할 경우 상속재산에 부과된 상속증여세는 면제됨.
미국	연방세법상 상속세는 없으며, 사망시 자산 처분에 대한 세금으로써 유산세가 존재 - 자선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은 금액의 제한 없이 유산세 공제가 허용
캐나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할 경우, 상속개시 직전에 상속재산의 처분으로 의제된 후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가능
일본	상속재산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실한 경우, 그 상속재산은 상속세의 과세가격에 산입하지 아니함.
영국	증여자가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자선단체에 대한 상속세는 금액한도 없이 면세됨.

사. 증여세 비교

- 미국, 캐나다를 비롯한 영미법계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달리 증여자가 증여 사실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수증자(Beneficiaries)는 소득세나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음.
 - 영국의 경우에는 상속세만 존재할 뿐, 증여는 자본이득의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이 다른 국가들과 다른 점임.

〈표 IV-7〉 주요국의 기부금에 대한 증여세 비교

국가	내 용
한국	상속재산을 공공단체, 공익단체 및 공익신탁에 기부할 경우 상속재산에 부과된 상속증여세는 면제됨.
미국	자선단체에 기증한 자산은 금액한도 없이 증여세 공제가 인정
캐나다	증여재산의 처분으로 의제된 후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가능
일본	증여재산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확실한 경우, 그 증여재산은 증여세의 과세가격에 산입하지 아니함.

아. 공익법인 범위관련 과세제도 비교

- 한국의 공익법인은 종교·자선·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상속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에 열거됨.
 - 우리나라의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포함함.
 - 우리나라의 경우, 공익법인의 범위는 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보다 넓게 정의됨.
- 미국의 경우, 기부금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IRC §170(c)상 자선단체의 범위와 연방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는 IRC §501(c)(3)상 자선단체의 범위는 유사하지만 동

일하지 않음.

- 캐나다의 경우, 기부금에 관한 조세지원의 대상이 되는 자선단체(charities)와 공익법인에 해당되는 자선단체의 범위가 일치함.
 - 다만, NPO의 경우, 기부금에 관한 조세지원의 대상이 되지 않음.
- 일본은 공익법인을 일본법인세법 별표 제2호에서 열거하고 있음.
 - 공공법인의 경우에도 일본법인세법 별표 제2호에서 열거하고 있음.
 - 특정기부금 대상이 되는 단체의 범위는 공익법인의 범위보다 더 넓음.
- 영국의 경우, 기부금에 관한 조세지원의 대상이 되는 자선단체(charities)와 공익법인에 해당되는 자선단체의 범위가 일치함.

〈표 IV-8〉 주요국의 공익법인 범위

구 분		내 용
한국	공익법인	종교·자선·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상증세법시행령 제12조에서 열거함.
미국	자선단체	IRC §501(c)(3)에서 규정하는 자선, 교육, 종교, 연구 등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
캐나다	자선단체	자선활동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고 등록된 비영리단체로, ITA §149(1)(f)에서 규정함.
	NPO	비영리조직 중 자선단체가 아닌 단체로 사회복지, 공익증진, 레크리에이션 및 기타 비영리 목적을 위하여 설립되고 운용되는 단체
일본	공공법인	일본법인세법 별표 제1호에서 열거한 법인으로, 국립대학법인, 지방공공단체, 일본중앙경마회, 일본방송협회 등
	공익법인	일본법인세법 별표 제2호에서 열거한 법인으로, 일반재단법인, 일반사단법인, 공익재단법인 등
영국	자선단체	자선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조직이나 신탁으로, CC와 OSCR에 의해서 등록된 단체

- 한국의 경우,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는 공익법인의 경우, 비수익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법인세 면제됨.
 - 한국의 경우, 수익사업소득으로 인해 발생한 과세소득에 대해서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을 인정하여, 추가로 과세소득에 대한 부담을 경감함.

- 미국의 경우, 고유목적과 관련 없는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과세소득에 대해서는 USD 10,000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고유목적무관사업소득세(UBIT)를 부과함.

- 캐나다의 경우, 자선단체에 해당될 경우 자선단체에서 발생된 모든 소득이 면제됨.
 - 다만, NPO의 경우, 특정시설의 경우에는 CAD2,000을 초과하는 연간투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부담함.

- 일본의 경우, 출연받은 자산에 대한 상속세·증여세가 면제됨.
 - 공익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됨.

- 영국의 경우, 자선단체로 기부되는 재산에 대한 자선단체의 과세는 면제되고, 자선단체의 자산운용으로 인한 투자소득, 이자소득, 부동산소득, 자본이득의 과세가 면제됨.
 - 다만, 면세대상이 되지 않는 소득과 자본이득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함.

〈표 IV-9〉 주요국의 공익법인 관련 과세제도 비교

구 분		내 용	
		출연재산 과세	운용소득 과세
우리나라	비영리법인	상속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비수익사업소득 법인세 면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미국	자선단체	유산재산, 증여재산에서 제외됨.	자선단체(IRC §501(c)(3))의 고유사업소득에 대해 법인세 면제
캐나다	자선단체	기부받은 자산 등으로 인한 과세의무 부담하지 않음.	자선단체 발생소득에 대해서 모두 과세되지 않음.
	NPO	기부받은 자산 등으로 인한 과세의무 부담하지 않음.	자선단체 발생소득에 대해서 모두 과세되지 않음.
일본	공공법인	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법인세 납부의무 없음.
	공익법인	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비수익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면제
영국	자선단체	Gift Aid를 통하여 기부받은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면제됨.	자선단체의 투자소득, 이자소득, 부동산소득,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 면제됨.

2. 시사점

가. 세제지원 대상 기부금의 범위

□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기부금은 주로 공익적 활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기부금이 그 대상이 됨.

- 공익적인 활동은 교육, 과학, 종교, 자선, 학술, 사회복지, 의료, 환경, 문화 등 영리적인 활동으로 이룰 수 없는 활동이 주로 포함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기부도 세제지원 대상이 됨.
- 정당에 대한 정치기부금도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며, 일반적으로 다른 기부금보다 더 큰 세제혜택을 부여함.

□ 공제대상이 되는 기부금의 유형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음.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산하조직에 대한 기부
- 비영리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기부
 - 비영리활동에는 교육(학술 포함), 과학, 종교, 사회복지(자선), 구호, 의료, 환경, 문화, 인권, 국제협력 등을 위한 활동이 포함됨.
- 정치기부금
- 기타
 - 한국의 경우 : 노동조합비, 영업자가 조직한 법인 등의 특별회비, 교원단체 회비, 국제행사조직위원회 기부금,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등
 - 일본의 경우 : 경제활동 활성화에 사용되는 기부금, 소비자보호를 위한 기부금 등이 포함됨.
 - 미국의 경우 : 퇴역군인단체에 대한 기부금 등이 포함됨.
 - 영국의 경우 : 스포츠 활동을 위한 기부금 등이 포함됨.

□ 공제대상 기부금 범위에 대한 시사점

- 한국의 경우 기부의 대상이 불특정다수가 아닌 특정된 구성원을 위한 기부금도 공제대상에 포함됨.
 - 예를 들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협회에 지급한 특별회비, 교원단체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또는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등
- 한국의 경우 외국의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금에 대한 조세혜택이 없음.
- 일본의 경우 비영리활동으로 보는 데에 논란이 있을 고용증진 등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이 있음.

□ 한국의 공제대상 기부금 기술방법의 문제점

- 공제대상 기부금으로 인정되는 단체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함.
 - 이는 동일한 비영리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도, 열거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 이 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이에 따라 과세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

- 또한, 열거된 단체의 경우 이후 활동의 성격에 대한 검증 없이 지속적으로 이 단체에 대한 기부금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비영리단체의 경우 특정요건을 충족하면 지정기부금 단체가 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반드시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어 국세청의 승인이 있는 경우 자선단체가 되는 영국, 캐나다에 비해서는 그 지정절차가 상당히 어려움.
- 공제대상으로 열거된 기부금의 공제요건이 복잡함. 이에 따라 공제대상 여부의 확인 과정에서 납세협력비용이 추가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 예를 들어, 특례기부금의 대상이 되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대한 기부금은 정보 문화 및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만 해당됨.
 - 이러한 사항은 실무상 적용의 어려움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나.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의 방법

-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방법으로는 크게 소득공제방식과 세액공제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조사대상 국가는 소득공제방식으로 세제지원을 하고 있음.
 - 세액공제의 세제지원은 캐나다에서 시행됨.
 - 캐나다의 경우 개인의 경우 세액공제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법인의 경우 소득공제방식을 취함.
 - 세액공제율은 일반기부금의 경우 15~29%, 정치기부금의 경우 33%~75%임.
 - 한국의 경우 개인의 정치자금기부금도 1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함.
 - 일본의 경우 정당 등 기부금도 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음.
 - 5천엔 초과금액에 대하여 30%를 세액공제할 수 있음.

다.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의 크기

□ 세제지원의 크기에 관한 시사점

- 한국의 경우 법정기부금 대상이 되는 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의 크기는 다른 조사 대상 국가보다 큼.
 - 법정기부금은, 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재민 구호, 교육시설의 연구비·교육비·시설비 등이 포함됨.
- 한국의 경우 특례기부금 대상이 되는 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의 크기는 다른 조사 대상 국가와 유사함.
 - 특례기부금의 경우 소득공제 한도는 50%임.
 - 특례기부금에는 의료시설의 연구비·교육비·시설비, 정부출연연구기관 기부금, 특정연구기관 기부금,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연구비·교육비·시설비 등이 포함됨.
- 한국의 경우 지정기부금 대상이 되는 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의 크기는 다른 조사 대상 국가보다 낮음.
 - 지정기부금의 경우 소득공제 한도는 개인의 경우 10%이며, 법인의 경우 5%임.

□ 법인 기부금의 조세지원제도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개인 기부금에 대한 조세 혜택 내용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지원제도가 적은 것으로 분석됨.

- 대부분 국가들의 기부금에 대한 지원제도가 법인 기부금보다는 개인 기부금에 보다 중점적인 관심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로 보여짐.

라. 용역 기부금의 인정 여부

- 기부금의 정의: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기증한 금전 또는 물품 등은 기부금으로 구분함¹¹⁵⁾.

115) 법인세법기본통칙 24-0...1

- ‘법인세법기본통칙 24-0...1’에 따르면, 기부금을 금전이나 물품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금전이나 물품이 아닌 용역의 무상제공에 대해서는 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음.
 - 하지만, 법정기부금(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을 기부금에 포함함.

- 앞서 조사한 국가는 모두 용역의 무상제공에 대하여 기부금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음.
 - 이는 용역에 대한 가치산정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됨.

- 하지만, 용역의 무상제공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부금으로 볼 수도 있음.
 - 이에 관한 예를 들면, 공익단체에 파견된 소속 직원에 대한 인건비 등을 기부금으로 포함시킬 수 있음.

마. 기부받는 단체에 관한 규정

- 규정의 복잡성
 - 한국의 개인 기부금에 대한 규정 중 특히 기부받는 단체들에 대한 규정들이 여러 개별 법률에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음.
 - 주요 국가들의 경우에는 혜택받은 단체들의 요건을 일괄적으로 정리하여 하나의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비교적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되어 있음.
 - 한국의 경우 기부받는 단체들이 법령에 직접적으로 특정되어 규정되고 있음으로 인하여 단체들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개별적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 기부금 조세혜택을 받는 단체들에 대한 규정을 좀 더 일반화하고 단순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짐.

- 공익활동의 사용 여부에 대한 사후검증
 - 법률에 의해서 규정된 기부받는 단체의 경우, 기부금을 수취한 이후 비수익사업에

이를 사용하더라도 이에 대한 검증이 쉽지 않음.

- 예를 들어, 교육기관의 연구비, 교육비, 시설비의 경우, 교육기관이 시설을 영리적 목적에 사용하더라도 이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 구체적으로 열거된 기부받는 단체라도 사후적인 검증절차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별과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캐나다와 영국의 경우에는 정부산하기관에서 기부금에 조세혜택을 받는 단체들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여기에 등록된 단체들의 경우에만 해당국가의 국세청에서 조세혜택을 인정하고 있음.

○ 기부받은 단체들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캐나다와 영국의 제도는 우리에게 좋은 사례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여짐.

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자산에 대한 과세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상속세나 증여세의 경우 기부의 경우에는 세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영미법계 국가의 경우에는 우리와 달리 증여자가 증여 사실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수증자는 소득세나 증여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 큰 특징임.

사. 공익법인의 운용소득에 대한 과세

□ 공익법인의 과세의무

○ 공익법인이 비영리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과세에서 면제되는 반면에 영리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과세됨.

- 다만, 캐나다의 경우 자선단체(charities)로 분류되는 경우 그 자선단체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가 면제됨.

- 한국의 경우 비영리활동에 의해 발생한 소득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음.
 - 이로 인해서 조세부담이 절감됨.
- 이에 비해 다른 국가의 경우 비영리활동에 대한 소득은 일반적으로 일반 규정에 따라 과세함.
 - 미국의 경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모두 과세하여야 하나, 수익사업으로부터 수취한 금액 중 USD 10,000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특례를 둬.

□ 수익사업으로 인한 소득의 조세부담 감경

- 한국의 경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체적으로 열거함. 따라서 비수익사업의 과정 중에 파생된 소득 중 수익사업으로 열거된 소득은 과세소득에 포함되어야 함.
 - 수익사업에는 이자, 배당, 주식양도, 사업으로 인한 소득 등이 포함됨.
- 수익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중 50~100% 가량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을 통하여 과세의무를 감소시킴.
- 캐나다의 경우 자선단체의 활동은 근본적으로 자선활동과 관련 있는 사업만 수행한다고 보아 그 단체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한 과세의무를 면제함.
- 일본의 경우 비수익사업에서 직접적으로 파생된 과세대상 소득에 대해서,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간주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을 인정하는 제도를 둬.
- 미국의 경우 수익사업에서 직접적으로 파생된 소득 중 10,000달러 초과분만 과세하여 조세부담을 감소시킴.

□ 운용소득에 관한 시사점

- 공익법인의 활동 중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은 어려움.
- 따라서 일반적으로 수익사업소득에 대해서도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의무를 경감하는 절차가 있음.
- 다만, 과세의무를 경감하는 절차는 국가마다 상이함.
- 한국의 경우 이자나 배당소득(100% 손금산입)을 제외한 사업소득 등의 경우에는

50%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또한, 이는 법인의 경우 법정기부금이나 특례기부금의 손금한도와 동일함.

- 캐나다는 전액 과세제외
- 미국은 USD10,000 초과금액만 과세함.
- 일본의 경우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기부금으로 보아 한도 내 손금산입됨.

참고문헌

박정수, 『주요국의 조세제도－영국편』, 한국조세연구원, 2004.

장근호, 『주요국의 조세제도－미국편』, 한국조세연구원, 2004.

손원익·김정아·송은주, 『주요국의 기부금 세제지원 현황』, 한국조세연구원, 2007.

Brude R. Hopkins, *Charitable giving Law made Easy*, John wiley&Sons, Inc., 2007.

Bruce R. Hopkins, *The tax law of charitable giving*, third edtion, John wiley&Sons, Inc., 2007.

Sarah Laing, *British Master Tax Guide*, CCH, 2008

James J. Fishman & Stephen Schwarz, *Taxation of nonprofit Organizations*, Foundation Press, 2003.

<http://www.hmrc.gov.uk/index.htm>

<http://www.irs.gov>

<http://www.ibfd.org>

<http://www.cra-arc.gc.ca>

<http://www.nta.go.jp>

세법연구 09-02

주요국의 기부관련 세제지원제도와 시사점

2009년 8월 24일 인쇄

2009년 8월 27일 발행

저 자 김진수 · 김태훈 · 김정아

발행인 원 윤 희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죽말길 28

TEL: 2186-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인쇄 고려문화사

© 한국조세연구원 2009

ISBN 978-89-8191-457-8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